

현안분석 2006-

주요입법의견조사

이 성 언

주요입법의견조사

Survey on primary Legislative opinions

연구자 : 이 성 언 (전문연구원)
Lee, Sung-Un

2006. 9.

국문 요약

이 보고서는 올바른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2006년 동안 제기되었던 입법의견들을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정리하였다.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신자 입양 허용 의견, 남자와 여자가 각각 18세와 16세로 다르게 규정된 혼인가능연령의 차별 폐지의견,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파파쿼터제의 도입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차별과 촌지를 각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비절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의견과 애완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애완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법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있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유용금지 법제 도입, 집행원제, 행복권, 양도불능, 혼인가능연령의 동일 적용, 파파쿼터제, 슬기 보호조치의 의무화, 양육제, 기부금입회제, 차별, 학교추진금절감, 아동학대방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법, 애완동물등록제(애완동물부담금), 이중대표소송제도, 집행원제도, 회사기회의유용금지, 저작권법

Abstract

This report examines primary legislative opinions raised in 2006. The opinions are classified into four fields: support for happy family life, establishment of a quality education system, construction of a better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order in economy.

The chapter on the support for happy family life includes discussions on the permission of single parent adoption, the abolition of legal discrimination in the age of marriage (18 for men and 16 for wome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pa quarter system which allows rights to paternity leave.

The chapter on the establishment of a quality educational system deals with opinions to solve recent social issues, corporal punishment and money from the parents to the teachers by legislation. The chapter also examines opinions on the permission of contribution-based university admissions to decrease admission fee and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chapter on the construction of a better society observes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law against ill-treatment of children as well as a law on pet registration system with registration fee to relieve social expenses on pets.

The chapter on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economy deals with three controversial discussions in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double derivative suit, act against usurpation of corporation opportuniti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e chapter also summarize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agenda of copyright that is in controversy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the technical protection, censorship, and conversion to the procedure that can sue on charge of illegal use of copyright without complaint.

Key Words : permission of single parent adoption, legal discrimination in the age of marriage, papa quarter system, corporal punishment, money from the parents to the teachers, contribution-based university admissions, law against ill-treatment of children, pet registration system, double derivative suit, usurpation of corporation opportunities, executive officer system, copyright act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I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II . 연구의 목적	11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	】
제II 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13
II	
III 독신자 입양 허용에 관한 입법의견	13
IV . 입양 요건 및 입양관련 현황	13
【 . 외국의 독신자 입양 관련 제도	15
I . 독신자 입양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6
II . 독신자 입양허용 의견에 대한 찬반론	17
III	
IV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에 관한 입법의견	21
V . 혼인가능연령 관련 현행 법령 및 문제점	21
.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1
【	】
I .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견	22
.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의견에 대한 찬반론	23
. 적정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의견	25
과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제도)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27
. 과파쿼터제의 의의 및 등장 배경	27

II		
III	. 외국에서의 파파쿼터제	29
IV	. 파파쿼터제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30
	. 파파쿼터제 도입 의견에 대한 찬반론	32
제 3 장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37
I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37
II		
III	. 기여입학제 관련 현황	37
IV	. 외국에서의 기여입학제	40
	. 기여입학제 도입의견	43
I	. 기여입학제 도입의견에 대한 찬반론	44
II	체벌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50
III		
IV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의 등장 배경	50
V	. 체벌 관련 법령 및 판례	56
	. 외국의 학생체벌관련 입법례	59
I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	63
II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에 대한 찬반론	64
III	학교춘지근절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68
IV		
	. 학교춘지 관련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68
	. 학교춘지에 관한 현행제도	71
	. 「학교춘지근절법」 제정 의견	72
I	. 「학교춘지근절법」 제정 의견에 대한 찬반론	74
제 4 장	더불어 잘사는 사회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85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입법의견	85
	. 아동학대 관련 현황	85

II		
III	. 아동학대 관련 현행법의 규정내용	86
IV	. 아동학대 관련 외국법의 규정 내용	87
【	. 아동학대방지 관련 입법】의견	91
I	애완동물등록제에 관한 입법의견	102
II	. 애완동물 현황 및 문제점	102
III	. 외국의 애완동물등록제 관련 입법례	103
IV	.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04
	.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에 관한 찬반론	107
【		
제5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111
II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111
III		
IV	.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개요	111
	.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12
【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122
I	.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31
II		
III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139
	. 저작권법 개정안 현황 및 주요내용	139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1
□	.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별 주요 의견	144
《		
제6장	결	155
》		

부 록

이벤트를 통한 입법의견 조사결과	159
-------------------------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

. 연구의 목적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법은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 사상, 윤리관을 담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회내의 갈등과 충돌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법이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의 견해가 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의 가치관과 법은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올바른 입법을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입법에 반영할 수 없고, 다수결의 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입법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다. 국민들의 의견들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방안을 제시한 후에도 이러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논의되는 다양한 논의들에도 귀를 기울여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목적이자 본연의 기능은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의 지원』이다. 연구원에서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입법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로 된다. 그리하여 연구원은 국민의 입법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요청하는 입법관련 의견들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고, 정부부처를 포함한 주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법제 관련 과제들을 추천 받기도 하며,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입법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도 한다.

매년 수행되는 『주요입법의견조사』역시 연구원에서 국민의 입법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과제다. 그리하여 이 과제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입법 수요, 법령 제 개정 에 관한 의견, 입법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입법의견들을 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의견들을 조사 정리하여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에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기능인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가능한 한 많은 입법의견들을 담고 싶었으나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논쟁이 있는 것을 우선시하였으며, 대립되는 주장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2006년에 발생한 입법의견들을 주로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 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원에서 개최한 과제발굴 이벤트를 통하여 표출된 의견들을 요약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논의의 전개는 입법의견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점, 관련현황 등을 제시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들을 검토한 후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자료의 수집은 학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신문 검색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원의 견해는 배제하였으며, 객관적 입장에서 종합 정리하였다.

제 2 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 】

독신자 입양 허용에 관한 입법의견

I

· 입양 요건 및 입양관련 현황

1. 입양을 위한 법정 요건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양친이 될 자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양친될 자격등)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②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2 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 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 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2. 우리나라의 입양 및 독신자 관련 현황

(1) 국내외 입양 아동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97년 이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 내	67,607 (30.0%)	54,639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42.1%)	1,461 (41.0%)
국 외	157,145 (70.0%)	138,486	2,443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57.9%)	2,101 (59.0%)
계	224,752	193,125	3,869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2) 독신자 가구 현황

연 도	전체가구	독신가구		
		계(%)	미혼가구(%)	이혼가구(%)
00년	14,608,576	2,051,467 (14.0)	1,487,251 (10.2)	564,216 (3.9)
01년	14,834,242	2,131,083 (14.4)	1,524,928 (10.3)	606,155 (4.1)
02년	15,063,671	2,215,416 (14.7)	1,564,456 (10.4)	650,960 (4.3)
03년	15,297,892	2,304,954 (15.1)	1,606,108 (10.5)	698,846 (4.6)
04년	15,538,741	2,400,343 (15.4)	1,650,261 (10.6)	750,082 (4.8)
05년	15,788,962	2,502,427 (15.9)	1,697,416 (10.8)	805,011 (5.1)

이상 입양 및 독신자 관련 현황 참고자료 :

[2006년 7월 18일,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우리나라의 독신자 입양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과 2005년에 각각 1건씩 독신자가 입양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006년 4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4) 소 결

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국내 입양의 경우 2001년부터 미세하나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외국으로의 입양되는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59%에 달하여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보다 20%가까이 상회하고 있음.

또한, 독신가구의 수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Ⅱ말 15,788,962 가구에 이르게 되었음.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의 독신자 입양 관련 제도

입양자격에 혼인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각 주(州)별로 다양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와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경우 등이 있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서유럽의 국가들은 양친자격을 혼인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외국의 독신자 입양 허용여부에 관한 사례

국 가	독신자 입양 허용 여부	특 징
미국	허용함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독신자 입양이 허용됨
영국	허용함	

제 2 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노르웨이	허용함	입양부모 조건은 부부입양과 동일함 독신자 입양일 경우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양쪽 성별을 모두 접할 수 있도록 권장함
덴마크	허용함	입양부모 조건은 부부입양과 동일함
프랑스	허용하지 않음	국내입양의 경우 허용하지 않고, 국외입양의 경우 일부 국가만 허용됨

[2006년 4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독신자 입양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 박찬숙 의원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1) 개정안 발의 배경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2006년 1월 29일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국내 입양의 활성화하고자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발의함.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養父母)의 자격 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06년 1월 20일, 박찬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보건복지부의 『국내입양 활성화종합대책』

(1) 개 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2006년 7월에 발표하였음. 이 활성화대책은 입양부모 자

격요건 완화와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번 대책의 시행 시기는 공무원대상 입양휴가제처럼 대책발표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있으나 입양부모자격요건 완화나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육아수당 지원 등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가 선제되고 나서야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2007년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2006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뉴스광장(<http://mohw.news.go.kr/>) 참조]

(2) 「국내입양 활성화대책」 입양부모 자격 요건 완화 대책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가정의 입양수요도 증가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완화(현행 50세 60세미만)하며,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현행 5명 이내) 제한 규정도 삭제함.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독신가정에 대한 입양은 일반적인 양부모 자격요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부모 가정조사, 입양동기, 입양교육 등의 입양^{IV}추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006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종합대책」]

. 독신자 입양허용 의견에 대한 찬반론

1. 독신자 입양허용 반대론

(1) 독신자 입양 시기상조

입양부모의 자격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어른들의 일방적 선택으로 평생이 좌우되는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

는 법을 개정, 부모의 자격에서 ‘혼인 중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독신자나 이혼자도 제한 없이 입양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입양기관 단체들은 한결같이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음. 입양을 가볍게 여겼다 도중에 그만둘 개연성이 높고,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들의 경험은 새겨들어야 할 점일 것임.

보건복지부는 가정조사 등을 통해 여건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미혼자의 결혼과 이혼자의 재혼 등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임. 문화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독신자의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적응기간 후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입양 여부를 결정케 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이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0년이 되면 1인(독신) 가구가 전체의 21.5%에 이른다(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면적 개방은 신중해야 함. 최소한 아이의 입장을 감안한 허 불허 규정이라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6년 7월 18일, 한국일보]

(2) 정상적인 가정에 의한 입양 풍토 조성

독신자의 입양은 아이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며 아이의 장래를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지 편모나 편부입양은 감성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아이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함. 독신자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것임.

[2006년 2월 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천주교 성가정 입양원 원장 레지나 수녀 인터뷰 내용]

(3) 사회적 시스템 미흡

출산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임. 외국처럼 나 홀로 육아가 가능한 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등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하고, 한 부모 가정이나 미혼 비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독신자 입양 허용을 허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입양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독신자 입양 허용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미숙아, 장애아동이 많지만, 정작 이 아이들을 입양하려는 가정은 별로 없는 실정임. 입양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2006년 7월 22일, 이현주 홀트 아동복지회 간사 인터뷰 내용, 우먼타임스]

(4) 성추행 등 학대 위험성

나 홀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성추행 등 아동학대 위험성이 높음.

[2006년 7월 22일, 우먼타임스]

2. 독신자 입양허용 찬성의견

(1) 독신자의 입양 수요 증가

최근 들어 결혼을 저하 등으로 인해 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가정도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독신자들의 입양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금번 우리부에서 발표한 입양대책중 독신자 입양허용 추진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임.

(2) 아동인권 보호대책 마련

독신자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양부모가정에 비해 입양 동기나 가정조사 등의 입양사전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아동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3) 전통적 가치관에서의 탈피 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벗어나 선진국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줄 필요가 큼. 아이가 없는 부모든 독신자든 고아가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입양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외국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국내 독신자에게 입양의 입양이 더 좋은 방안 일 수 있음.

(4) 해외 입양률 감축에 기여

독신자 입양이 허용될 경우 한국인 해외 입양률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기에, 엄격한 기준과 제한이 따른다면 독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할 이유 없음.

(5) 개연적이고 과장된 확대가능성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성추행 및 학대 등에 대한 우려는 양친이 있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음.

이상 독신자 입양 찬성의견 참고자료 :
[200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년 1월 31일, 동아일보 기사참조]

【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에 관한 입법 의견 】

I

· 혼인가능연령 관련 현행 법령 및 문제점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로 혼인가능연령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녀의 육체적 생리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임. 그러나 이렇게 남녀 혼인가능연령을 각각 달리 규정한 것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왔음.

이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남녀 평등차원에서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하고자 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하였고, 법무부 역시 이에 관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혼인가능연령에 차이를 두지 않는 나라

(1) 혼인가능연령과 성년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한 국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이 나라들은 성년연령이 만 18세로 하여, 결과적으로 혼인가능연령의 남녀차를 없애고 성년연령과 혼인가능연령을 일치시켰음.

(2) 혼인가능연령과 성년연령을 다르게 규정한 국가

영국, 미국은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6세로 규정하여 남녀간의 차별은 없지만 성년연령과의 차이는 존재함.

2. 혼인가능연령에 차이를 두는 나라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를 혼인가능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규정하여 이 두 국가 모두 혼인가능연령에 남녀간의 차별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1996년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2006년 9월 21일, 결혼나이에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법무부 보도자료]

.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견

1. 이계경 의원의 발의 민법 일부법률개정안

민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혼인가능연령상의 남녀차별을 폐지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第801條(約婚年齡)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者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約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第8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01條(約婚年齡) 만18세에 달한 사람은 父母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約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第8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07條(婚姻適齡) 男子 滿18歲, 女子 滿16歲에 達한 때에는 婚姻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18세에 달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006년 5월 22일, 민법일부 개정 법률안,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 법무부의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노력

법무부는 남녀 혼인가능연령이 개정되면 불합리한 남녀 차별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이 한

증 강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람직한 혼인가능 연령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된 후 현재 개정작업중인 민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200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6년 9월 21일, 결혼나이에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법무부 보도자료]

·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의견에 대한 찬반론

1. 개요

혼인가능연령의 차별폐지의 입법안이 발의되자 가장먼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혼인가능연령의 차별에 이유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뒤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에 대한 지지 의견을 보냈으며,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함.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입법의견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2.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찬성론

- 남녀의 혼인가능 연령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관하여는 흔히 「남녀의 육체적 생리적 조건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만 16세에 도달한 남성이 동 연령의 여성에 비하여, 혼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육체적 생리적인 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임.
- 부에게 가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높은 성숙이 요구되며 또한 남자는 사회생활에 종사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까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성별 역할분담 의식 때문임.

제 2 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 입법론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남존여비의 풍습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평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혼인은 사회에서 육아와 돌봄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남녀 공히 일정한 교육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적 독립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인정되어야 함.
-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혼인생활은 신체적 성숙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한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이념에 비추어, 신체적 성숙을 이유로 남녀간의 혼인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인 차별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선진 각국도 남녀간의 혼인가능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을 사회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남성은 경제적 부양, 여성은 출산과 양육, 가사돌봄이라는 가부장적인 성역할이 실제로 붕괴되어지고 있음. 남녀의 신체발육 상태가 다르고 어린 여성의 임신은 혼인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녀의 혼인 연령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부논리는 과학적 설득력이 없고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임.
- 성개방 풍조에 따라 나이 어린 여자의 임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성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 남성의 연령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음.
- 현행법을 따른다면, 상대 남성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이라면 만16세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결혼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른 불합리한 결과임.

[2006년 7월 26일, 혼인적령의 변경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년 9월 21일, 결혼나이에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법무부
 보도자료]

[2006년 7월 28일,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3.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반대론

-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혼인가능연령을 규정(제한)한 입법 취지에도 반함
- 민법이 혼인가능연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자는 생물학적, 정서적으로 여자보다 성숙이 더디므로 그에 맞춘 것이고, 양성평등과는 무관함. 특히 이 규정은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지 않으면, 여자의 경우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고, 어떤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성개방 풍조와 관련하여 나이 어린 여자가 임신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능하면 혼인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어 안정시켜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풍조와도 맞지 않음.

[2006년 7월 1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 적정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의견

성년 연령과 혼인가능 연령을 일치시킬 것인지, 혼인가능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임.

1. 혼인가능연령 만17세 의견

현재 민법상의 성년은 만20세로 되어 있지만 성년 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법무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은 성년연령을 만19세로 낮추었는 바, 현행 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혼인가능연령을 만18세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제 2 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현재 매년 약 700명 가량의 여성이 만17세에 결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미성년 여성의 혼인 비율]

	16세 결혼 여성	17세 결혼 여성
2004년도	230명	715명
2005년도	205명	694명

자료 : 통계청, 『인구통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분석

2. 혼인가능연령 만18세 의견

우리나라의 교육 직제상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만18세인데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 종료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성숙은 필요하고, 외국 입법례도 대부분 혼인 가능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있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완전한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성년의제 제도 때문에 너무 낮은 연령에서의 혼인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등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3. 혼인가능연령 상향 조정 의견

혼인가능연령은 남녀 공히 일정한 교육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적 독립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인정되어야 하기에 남녀 공히 그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이상 혼인가능연령에 대한 입법의견 참고자료

[2006년 9월 21일, 결혼나이에 남녀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법무부 보도자료]

[2006년 7월 26일, 혼인적령의 변경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과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의견 】

I

1. 과파쿼터제의 의의 및 등장 배경

1. 과파쿼터제의 의의

과파쿼터제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로서, 그 본래적 의미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음. 혹은 부모 중 한 가지 성을 명시하지 않고 한쪽 성이 전체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함.

그러나 최근에는 과파쿼터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부의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의 실제적인 사용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전제되는 것을 말함.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 홈페이지(<http://hjkim.or.kr>), 공지 사항 참조]

2. 과파쿼터제의 등장배경

(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에 의하면, 만 1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12개월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즉,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3개월 중 최소 1.5개월을 반드시 출산이후 사용해야하기에, 사실상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0.5개월이라고 볼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8년 출생아동 부터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개정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출산휴가가 끝나야 받을 수 있음. 두 사람 모두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한사람만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이용현황

노동부의 조사결과, 육아휴직제도 도입 뒤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이용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6,816명에서 2005년 1만700명으로 5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뒤 육아휴직을 연계해 이용하는 비율이 2003년 5명중 1명꼴인 21.2%였으나 지난해에는 4명 중 1명꼴인 26.0%로 다소 증가함.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지급액은 2003년 106억 원에서 2005년 282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4분기 중에는 2,876명에 대해 75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만원(대체인력 신규채용 시 20만 30만원 추가지급)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육아휴직 이용률 및 지급금액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현황	
	산전후 휴가자수	육아 휴직자수	이용률	육아휴직 급여액	지원인원 수	지급액
'2006.1.4	11,535	2,876	24.9	75	1,566	26

【 과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2005	41,104	10,700	26.0	282	4,594	72
2004	38,514	9,303	24.1	208	4,561	67
2003	32,133	6816	21.2	106	3,877	53

[2006년 4월 21일, Labor Today, 기사참조]

(3)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육아휴직제도는 본래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보면 2005년 총 육아휴직 사용자 10,799명중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8명에 불과해 사실상 남성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해있음. 그러나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4%가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에 찬성으로 나타남.

[2006년 6월,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발의의원, 공동기자회견문]

(4) 과파쿼터제 도입을 위한 출산과업

시민단체인 일과아이는 과파쿼터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출산과업을 선언함. 출산과업이란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빗대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라는 요구사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2006년 8월 30일, 과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과업 선언문]

· 외국에서의 과파쿼터제

1.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국가

덴마크 :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프랑스 : 11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스웨덴 :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부성휴가 제공

2.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 국가

노르웨이 : 부모휴가 기간(52주)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스웨덴 : 부모휴가 기간(240일) 중 부와 모에게 각각 60일씩 할당

[2006년 6월 16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 키워요(출산을 높이기 외국에서 쓰는 **넉** 떻게), 국정브리핑]

. 파파쿼터제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 파파쿼터제의 세부내용

(1) 기 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12개월 중 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할당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모의 육아휴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12개월의 육아휴직기간에 부가 사용해야 하는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함.
- 1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기존에 부여되는 부모육아휴직기간 12개월에서 사용하도록 함.

(2) 급 여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 함. .
- 1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는 현재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함.
-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시, 정부 사업자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함(고용보험 누적 적립금 2005년 말 기준으로 9조 1197억 원에 달함).

(3) 의무화 방안

1) 의무사항

- 과파쿼터제 미사용시 사유서를 제출케 함
- 사유서 미제출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함

2) 활용방안

- 정부기관, 공기업 인사고과 불이익 방지 제도화함(일반기업은 권고)
- 선출직 공무원 공개자료로 활용함
- 기업별 사용현황 공개함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 홈페이지(<http://hjkim.or.kr>), 공지사항 참조]

2. 관련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13개월로 1개월을 더 보장하고,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1개월 이상은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는 남성근로자가 사용함. 다만,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근로자를 육아시킬 수 없을 때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유서를 제출함.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의 최초 1개월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006년 9월 28일,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 홈페이지(<http://hjkim.or.kr>) 참조]

IV

. 파파쿼터제 도입 의견에 대한 찬반론

1. 도입찬성론

(1) 아버지의 가족권 실현

파파쿼터제의 도입으로, 부의 돌봄 노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무화함으로써 부의 자녀돌봄에의 실제적인 참여와 가족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2) 육아휴직제도이용 확대

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 문화, 경력관리에 대한 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6월 20~44세의 기혼여성 3802명(첫아이 출산 당시 취업여성 1255명)을 조사한 결과 일하던 여성 2명 중 1명이 첫아이 출산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둠. 현재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점은 ‘자녀 양육 시간 부족’(46.4%), ‘일 가사 병행 곤란’(39.0%) 순으로 나타남.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고 급여 현실화를 확보하는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계기가 될 것임.

(3) 사회 이익 양산

우리 사회의 아버지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 ‘육아에 무관심한 아버지’로 인식되어 있음. 그 배경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 치열한 경쟁, 휴직을 기피하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고 있음.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기업과 사회 전체에 음으로 양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 올 것임

(4) 남성 육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아이가 만 3세 이하일 때 갖게 되는 부모의 이미지와 행동이 아이의 인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아버지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부의 남성 74%가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2005년 가족실태조사).

(5) 가정의 회복에 기여

과파쿼터제가 도입되면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가정에서는 아버지 육아 참여의 발판이 마련되고 여성에게 치우쳤던 기존 육아문화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임. 이런 환경에서는 이혼율이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음. ‘육아에 적극적인 아버지상’이 세워지고 아이들의 인성 형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6) 고용보험 적립금을 통한 재원 확충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9조원 이상 적립금이 있는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임.

(7) 지원책과 감독강화를 통한 제도정착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수혜 폭을 넓히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감독 강화를 병행하며 보완해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임.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 홈페이지(<http://hjkim.or.kr>), 공지사항 참조]

[2006년 9월 18일, 천준호, 지상토론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세계일보 기사참조]

2. 도입반대론

(1) 경제현실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

최근 들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특히 육아휴직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치는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옴. 기간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우리나라보다 후하게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함. 그것도 북유럽 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여건에서 파파쿼터제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제환경과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

(2) 고용불안 해소 등이 더 시급

남성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재에도 그 활용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도입에 앞서 소득 향상과 보육시설 확충, 고용불안 해소 등 일 것임.

(3) 대기업 공공기관 등만 혜택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지금도 복지 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한정될 것이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근로자의 여가를 늘려주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실제로 이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많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되고 있어 육아휴직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4) 경제와 복지의 균형적 발전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경제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가운데 하위 수준임. 적어도 경제와 복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복지 수준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 휴가일수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3배정도 증가하였음. 이런 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5) 왜곡된 이용 가능

육아보다는 오히려 직장과 관련된 남성들의 연수기간 등으로 왜곡돼 사용될 수도 있음.

[2006년 10월 12일, Labor Today, 기사참조]

[2006년 9월 18일, 김정태, 지상토론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세계일보 기사참조]

제 3 장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 의견 【 】

I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입법 의견

. 기여입학제 관련 현황

1. 기여입학제의 의의

(1) 기여입학제의 개념

기여입학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에 물질적으로 기여(기부금)가 있는 자를 이를 조건으로 하여 동시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부금입학제와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거나 상관없이 대학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를 이를 조건으로 하여 동시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 그리고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거나 상관없이 대학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에게 동시적 혹은 차후에라도 이를 조건으로 하여 입학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여우대제로 나눌 수 있음.

[2001년 3월,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검토, 입법정보 제34호]

최근 일고 있는 기부금 입학제 관련 논의는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맞물려 있는 바 그 성격이 “기부금입학제”와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여입학제가 기부금 입학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비물질적 기여 역시 논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에 이하 용어는 “기여입학제”로 통일하여 전개하겠음.

(2)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

최근 기부금입학제가 대학 교육여건의 낙후성 및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기부금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본고사, 고교 등급제와 더불어 기부금입학제를 이른바 ‘교육 3불 정책’의 하나로 여겨, 도입을 인정하지 않아왔음. 다시 말해, 대학 교육여건의 개선보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에 의한 교육기회의 부여하여야 한다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여 온 것임.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부금입학제의 활성화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기부금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음.

2. 기여입학제 도입 논의의 배경

(1) 높아지는 교육비 부담

최근 3년간 학생1인당 연간 대학등록금

(단위: 명, 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대학생1인당 등록금	304	374	391
4년제 사립 대학생1인당 등록금	515	536	564

2006년 2월 8일 통계청의 2005년 가계수지 동향 발표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11.6%)이 사상 최고로 나타남.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0년 10.9%, 2001년 10.8%, 2002년 10.9%, 2003년 11.4%, 2004년 11.2%로 ‘04년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2) 열악한 대학재정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수에 비해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하는 2006년 전체 교육예산은 29조2천4백억원 중 12.6%인 3조6천800억 원에 불과함. 고등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함.

(3) 사립대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 심화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 대학의 86%(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67.4%에서 70.4%로 상승하였음.

<표5>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운영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	비 중	2004년	비 중	2005년	비 중
등록금 수입	78,944	72.9	97,149	74.2	100,548	79.1
전입 및 기부수입	21,859	20.2	25,938	19.8	18,779	14.8
교육부대수입	2,522	2.3	3,097	2.4	3,317	2.6
교육외수입	5,014	4.6	4,757	3.6	4,397	3.5
계	108,340	100.0	130,941	100.0	127,041	100.0

(4) 취약한 장학제도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 의존이 높는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함. 사립대는 등록금 징수 총액에 비해 장학금 규모가 매우 낮아 등록금대비 장학금이 6.6%에 불과하며, 국공립대는 낮은 등록금만큼 1인당 장학금 수준도 매우 적음(2004년 기준 사립대의 1인당 장학금 118만원, 국공립대는 62만8천원에 불과함).

(5) 심각한 대학생 해외유학

높아지는 국내 대학의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가 심각함. 2005년 4월 기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해외유학규모는 6만5천여 명으로 2004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 총수의 3.5% 규모임.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해외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대학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상 기여입학제 도입 논의의 배경 참고문헌 :

[2006년 4월 14일,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3.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학생 선발 전형은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기여입학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임.

· 외국에서의 기여입학제

1. 각국의 기여입학제도 개요

기여입학제 대학제도	공식적으로 없음		있 음	
	국 공립대학 중심체제	공익형 (유럽형)	프랑스, 독일, 영국 동구권(구 사회주의) 국가	국가관리형

사립대학 중심 체제	음성적 시장형	한국 일본	자유시장형	미국
------------	---------	-------	-------	----

2. 유 럽

유럽의 경우 기부금 또는 기여입학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 영국)를 제외하고 사회 주변집단(계층, 지역, 인종)에 대한 기회보장의 성격으로 특례입학이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개인적 기부나 기여에 의한 입학특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따라서 유럽식 공익형 제도는 사회계층간 균형을 목표로 국가가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부금을 포함한 특례입학의 경우도 대체로 하위 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 중 국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수 엘리트 학생에게 공부로 교육하고 졸업 후 직장을 배정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필요한 인력소요와 취업자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공비 정원 이외로 교육비의 50%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는 주독생 제도를 도입함. 최근에는 주독생 제도가 발전하여 자비생 제도로 바뀌었음. 자비생은 정식 합격생인 공비생보다 일반적으로 입학 점수가 10%정도 낮고 대부분의 학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음.

주독생, 자비생 제도를 주로 고액의 기부금이나 개인의 명성 및 지위의 후광으로 나타나는 서구의 일반적인 기부금입학제나 기여입학제와 비교하면, 그 수준은 낮지만 자비생의 수적 규모가 매우 크고 국 공립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기여입학제로 보아야 할 것임.

4. 미 국

미국 대학의 학생선발 원리는 일반 선발과 선택적 선발로 구분됨. 미국적 대학자율성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선택적 선발이 교육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음.

- 선택적 선발 유형

- (1) 지역사회나 대학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
- (2) 농촌 고교 졸업생
- (3) 각종 특기자
- (4) 체육 특기자
- (5) 인종적 고려
- (6) 비정규 고교 수료자
- (7) 장애인
- (8) 재입학 지원자
- (9) 기타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할 때

- 선택적 선발에서 기부금/기여입학의 유형

- (1) 특별 기여자에 대한 동일 영역의 입학
- (2) 연구소 중심 기여자에 대한 복수 전공을 위한 입학
- (3) 대학에 공로를 한 자의 입학
- (4) 특수 영역의 편입학
- (5) 석좌교수 기금 기여자의 입학
- (6) 동문으로서 전국적, 지역적 명문가의 입학
- (7) 유명주립대학의 경우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특별입학제도 운영

하버드대의 경우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루덴슈타인 총장이 추진한 학교기금 모금 캠페인에서 약 26억의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는데, 기

부자의 80%가 동문들이었음. 단, 유명대학의 경우 동문 기부금이 자녀의 입학특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문의 명망 및 지위와 자녀의 기본적인 수학능력이 공식적인 조건으로 알려져 있음.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2000년도 학교예산규모는 17억 7000만 달러이며, 이중 기업체가 제공한 연구지원금이 38%, 기부금 운영에 의한 투자소득이 22%, 등록금 수입이 16%, 동문을 포함한 개인 기부금 수입이 5%, 기타 소득이 19% 였음. 기부금 운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금운영을 위해 스탠포드대학은 기부금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5. 일 본

일본의 대학은 국가 대학정책과 사회관념상 기부금이나 특정 기여에 의한 입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하지만, 추천입학제 및 특별전형제가 있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성격과 교육열이 높으면서 높은 교육비가 드는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비공식적으로 기여입학제가 상존하고 있음.

이상 외국에서의 기여입학제 참고자료 :

[2001년 3월,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검토, 입법정보 제34호]

. 기여입학제 도입의견

우리 사회에서 기여입학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1년 12월 한국개발원에서 ‘비전 2011’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하여 기여입학제를 점차 도입 해 갈 것을 주장한 바 있음.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진념 부총리가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전국교직원연합 등에서 반대성명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최근 한나라당은 교육비경감 테스트포스를 구성하여, 11조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을 6조원 규모로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립대학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등록금수입 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어 놓음. 특히 장학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해 500억원을 마련하고, 1조6000억원 규모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전문대와 연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음.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IV
[2006년 4월 1일, 한나라당 교육비 경감태스크 포스팀, 야후뉴스 기사 참조]

. 기여입학제 도입의견에 대한 찬반론

1. 기여입학제 도입 찬성론

(1) 대학의 자율화에 기여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의 하나임. 대학운영의 자율화는 대학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돕는 방안임. 대학이 모든 구성원을 뽑는 방식은 대학 스스로가 정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획일적 구조에서 기여입학제만 부각시켜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은 자칫 자율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불러올 수 있음. 자율화는 기여입학제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좋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교육에서도 평등사상에 기초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화가 있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교육의 질에 대한 염려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학생당사자와 학부모들의 절실한 희망이기 때문임. 이를 믿고 과감한 자율화를 시행해야 할 것임. 설령 단기적으로 혼돈이 있으리라 염려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임.

(2) 열악한 대학재정 개선에 기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등록금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임. 자율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임.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열악한 대학의 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임.

(3) 대학간 경쟁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기부금을 받기 위한 대학들 간의 경쟁은 교육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경쟁의 심화는 대학들로 하여금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임.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質)을 높임에 있어 정부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교육을 받은 사람의 생산성 증진으로 우선적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을 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민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음. 결국 대학 스스로가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여입학제는 대학이 스스로 서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임.

(4)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론에 대한 답변

1) ‘재단 유용 및 졸업생 수준 저하 우려’에 대한 답변

형편없는 대학이나 발전가능성이 적은 많은 기부금을 내는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임. 다시 말해, 기부금이 교육에 재투자되지 않을 만한 학교는 기부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임. ‘돈’만을 위해 기부금입학을 허용하는 경우, 대학평판이 떨어질 것이란 사실은 학교재단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임.

기부금으로 입학한 학생이 함량미달인 상태로 졸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가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

아지고 실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부금을 교육에 재투자하지 않는 대학은 학생과 교수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시장 경쟁에 노출되면 재단 비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임.

2) ‘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한 답변

양극화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못지않게 기회의 양극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할 것임. 기여입학제 도입의 반대론자들은 기부금입학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나, ‘기부금입학 허용’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즉, 교육을 매개로 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음. 기부금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져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신분 상승 기회를 주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기부금의 특정 사립대학에의 집중 우려’에 대한 답변

세액공제제도를 대학에도 확대하여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한도 내에서 모든 대학들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지방학교들도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기여입학제를 만약에 제도화한다면 그 중에 일부의 기금은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기부금을 많이 못 받는 대학들에게 따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할 수 있을 것임.

[2005년 7월 21일, 이경원, 자유기업원 홈페이지(<http://www.cfe.org>) 참조]

[2000년 6월 30일, 유승동, 자유기업원 홈페이지(<http://www.cfe.org>) 참조]

[2006년 7월 18일, 송병두, 동아일보 기사 참조]

[2006년 4월 30일, 이주호의원 인터뷰 내용, MBC뉴스현장, 문화방송 홈페이지(<http://imbc.com>) 참조]

2.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론

(1) 재단 유용 및 졸업생 수준저하

대학 재정의 예 결산, 감사 과정이 불투명해 사학재단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대 재정문제를 기부금입학으로 풀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임. 즉 사학재단의 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2006년 5월 31일, 박거용 교수 인터뷰,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2001년 3월,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검토, 입법정보 제34호]

(2) 양극화 심화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지만 현재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체제 속에서는 국민적 위화감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정의 오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즉,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셈이며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함.

[2002년 2월 14일, 한겨레신문 기사참조]

(3) 기부금의 특정 사립대학에의 집중

기부금을 통한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면 대학의 서열화, 학벌주의에 대한 폐해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모두가 들어가려는 대학은 대학서열상 상위 몇몇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임. 결국 기부금 입학금액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극명해질 것이고, 기부금의 혜택은 서열상 상위에 있는 몇몇 대학에 그칠 것임.

[2001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4) 공교육의 위기 초래

세계적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적응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의 절대액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는 국공립학

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부족을 국민이 부담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교육비로 메우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사교육의 발흥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위기로 귀결될 것임.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한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 허용은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책무유기로서, 국민에게 세금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넘어 대학진학에 까지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임.

[2002년 2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eduhope.net>) 참조]

(5)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

기부금제공가능자의 범위도 극히 일부분만이 가능할 것임.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그 액수는 상당 수준 이상이 될 것인데,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에 해당하게 될 것임. 결국 99.99%의 국민에게는 다른 세계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며, 돈만 많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만 심어줄 것임.

[2001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6) 기여입학제 도입 전 적립금부터 사용

기여입학제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대학의 학생들만이라도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이미 지금도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은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임.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의 총액은 무려 5조3천억 원에 이름. 등록금 총액은 약 11조원이니 적립금의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대학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항목별로 사용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기여입학제가 도입되어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반드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리라는 보장이 없음.

[2006년 4월 17일, 조성주, Pressian Views 인터뷰 내용 참조]

(7) 기여입학제 도입 찬성론에 대한 답변

1) ‘세액공제 방안’에 대한 답변

정당후원금처럼 대학기부금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면 대학들이 동창회를 통해 수천억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발전에 공을 세운 인사의 자녀들에게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면 1조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음. 10만원 세액공제 해준다고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아봐야 알 수 있고, 세액공제를 대학기부금에까지 확대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텐데, 그 부족분은 결국 증세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됨.

[2006년 4월 4일, 오마이뉴스 기사내용 참조]

2) ‘외국의 기여입학제’에 대한 답변

미국, 일본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로 소개하지만,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존재함. 유럽 대학이 미국 대학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누가 말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미국의 기부 문화는 요즘 이야기되는 기부금입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처럼 사립대를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자식을 대학에 집어넣기 위해 기부하지 않기 때문임.

[2002년 2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eduhope.net>) 참조]

3. 시기상조론

기여입학제가 도입되어 실행된다면 분명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재정 확보 차원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이 제도의 도입은 몇 가지 전제 요소로서

우선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기본철학이 아직까지는 교육계는 물론 우리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여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될 때 까지 도입을 유보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불필요한 잡음이나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의 종류와 한계, 기여 정도의 측정 기준이나 방식, 기여의 유효 횟수 및 기한, 공개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사립대학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임.

[2006년 9월 8일, 김병주,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및 재정규제 완화, 대학 학생 재정지원 혁신을 통한「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및 대학경쟁력 강화 달성 입법 공청회 자료]

①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을 제시한 의견이 있음.

②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학생은 정원 외에서 그 수가 소수로 고정 되어야 함.

③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 즉 입학만 하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는 현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

대학(특히 사학)의 자금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2005년 12월 2일, 구굿닷컴 기사 참조]

체벌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의 등장 배경

1. 과잉체벌관련 사례

최근 들어 과잉체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과잉체벌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과잉

체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체벌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아래는 최근 과잉체벌 사례들을 정리한 것임.

- 2006년 8월 29일, 대구 K고등학교와 피해학생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학교 3학년 담임 A(43)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C(18)군이 1교시 수업에 7분가량 지각했다며 손으로 목 뒷부분을 30여대가량 때림. C군은 이후 인근 병원에서 목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탈착식 깁스를 했고, C군의 부모는 도가 지나쳤다고 경찰에 고소할 뜻까지 밝혀 체벌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2006년 8월 30일, 한경닷컴).
- 2006년 8월 15일 대구 O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이 학교 3학년 담임 A교사가 옆반 학생인 B(18)군이 5분가량 지각했다며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200대 때림. A교사는 이날 함께 지각한 같은 반 C(18)군도 매 100대를 때림. A교사는 이날 B군 등의 담임 교사가 없는 사이 이들의 지각 사실을 확인하고 체벌했으며 B군에게는 지각한 데다 머리카락이 길다며 더 심한 체벌을 가함. 매를 맞은 학생들은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이 피로 젖는 등 상처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B군은 매를 맞은 뒤에도 1시간 동안 서서 수업을 받다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담임교사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져 입원 치료를 받음. B군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으며 B군의 부모는 과잉체벌이자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학교 측에 항의함(2006년 8월 15일, 연합뉴스).
-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따귀를 때리는 사건이 잇혀질 때 쯤 초등학생을 향해 책을 집어 던지는 동영상도 파문을 일으킴(2006년 8월 26일, 민중의 소리).
- 광주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교사 B씨가 옆반 학생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두피가 찢어지면서 피해학생 부모로

부터 피소를 당해 결국 해임 당함(2006년 9월 7일, 전남매일).

- 2006년 8월 21일 전북 군산시의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노트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 10여명을 교단으로 부른 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향해 책을 집어 던져 결국 교사가 해임됨(2006년 8월 18일, 한국일보).
- 2006년 5월24일 전북 익산시의 특성화 고교 교장(54)은 2학년 P(17)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P양이 뇌진탕 진단을 받음(2006년 8월 18일, 한국일보).
- 2006년 4월20일 광주 K중 운동부 숙소에서 코치가 씨름을 그만두겠다며 잦은 결석과 가출을 해 온 학생의 뺨을 손으로 때려 고막을 파열시킴(2006년 8월 18일, 한국일보).
- 2005년 3월 중순 전남 장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습시간에 떠든 학생들을 불러내 자신의 뺨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스스로 때리게 하는 가혹행위를 함(2006년 8월 18일, 한국일보).

2. 체벌관련 설문 결과

(1) 교사들의 체벌 인식에 관한 설문결과

교육전문 월간지 ‘좋은교사’가 전국의 초 중 고 교사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응답이 나왔음.

[2004년 11월 5일, 교육혁신관련 브리핑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참조]

1) 체벌의 필요성의 관한 조사

‘체벌이 악용 남용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78%)

‘체벌이 교육적 의미도 없고 부작용이 더 많다’ (11%)
‘교육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화나 교육 여건상 불가피하다’ (10%)

2) 체벌 경험에 관한 조사

‘체벌을 전혀 하지 않는다’ (10%)
‘일정한 원칙 아래 교육적 체벌을 한다’ (43%)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42%)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체벌하는 편’(5%)

3) 최근 일고 있는 체벌금지법 제정 결과에 대한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은 체벌금지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무질서와 통제불능 상황이 많아 교육적 손실과 교권 실추가 우려된다고 답변함.

반면 학교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7%에 이룸.

4) ‘언제 매를 드는가’에 대한 조사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고 피해를 줄 때,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 교사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체벌이 사라지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체벌을 대신할 만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학급 당 학생수와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2) 전교조 교사의 체벌 필요성에 대한 설문

광주교사신문 100호 발간을 맞아 광주지역 전교조 교사 419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자우편 설문조사전교조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진보 성향인 전교조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학교 내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조사에서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69.2%인 290명은 찬성하고, 30.8%인 129명은 반대함. 이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밝힌 이념성향이 진보 66.5%, 중도 24.8%, 보수 8.6%로 진보성향이 주류를 이뤘고, 전교조가 줄곧 체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뜻밖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2006년 11월 8일, 한겨레신문 기사참조]

(3) 체벌금지법안 제정에 관한 설문결과

포털사이트 네이트온에서 체벌금지법안의 입법화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학생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봉사활동이나 감점 통해 훈육 가능 : 2474표 (23.22%)

반대 - 교육 목적의 사랑의 매는 필요 : 8099표 (76.02%)

잘 모르겠다 : 81표 (0.76%)

[네이트닷컴(www.nate.com)]

3. 체벌금지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

(1) 체벌금지, 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 결성

2006년 8월 30일 국회에서 최순영 의원, 강혜숙 의원, 고진화 의원, 손봉숙 의원 등 모두 23명(열린우리당 11명, 민주노동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의 국회의원이 ‘체벌금지, 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을 결성함.

[2006년 8월 31일, 프로메테우스]

(2)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촛불 문화제 개최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학생인권법(초등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국민 여론화 사업을 진행함.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는 구정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장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현원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진숙 이사 등이 릴레이로 참석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오부터 1시간동안 진행함. 또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학벌없는사회 홍세화 대표, 가수 신해철씨, 배우 권해효씨등도 참여하였음.

또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음. 또한, 학생인권법 여론 확산을 위해 오는 23일 전주,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인천 등 지역순회 공청회를 진행하며 오는 15일 저녁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학생인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였음.

[2006년 9월 15일, 민중의 소리 기사 참조]

(3) 전교조 성명서 발표

과도한 학생 체벌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학생인권 보호 법제화를 촉구함.

[2006년 6월 27일, 전교조 홈페이지(<http://www.eduhope.net/>) 참조]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 성명서 발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위원 38명은 2006년 9월 1일 ‘체벌금지 법제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체벌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함.

[2006년 9월 1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http://www.ncyok.or.kr/>) 참조]II

. 체벌 관련 법령 및 판례

1. 체벌 관련 법령

①

(1) 학습자의 인권존중 : 교육기본법 제12조

②

③제12조 (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② (2) 학생 징계의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학생 징계의 한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체벌관련 판례

(1) 용인 가능한 체벌 범위

체벌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다면 사랑의 매가 아님. 또한, 공개적 장소에서 체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므로 교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그리고 교사의 심리 상태가 흥분 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님.

[1999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2)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 허용

초 중등교육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할 수 있음. 징계권 행사 범위내의 체벌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됨.

[2000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3) 학생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로 다음 사항을 제시함.

-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

[2001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

3.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침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추진

1. 목 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사랑이 있는 학교 만들기 문화를 조성한다.

2. 추진방법

- 체벌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교직원 연수 강화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법 지양

3. 주요 내용

(1) 단위 학교별로 학교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나. 체벌 관련 학교규정 제정 보완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
- 학교실정을 고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
- 체벌의 인정 범위, 절차, 방법, 유형 등 명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절차 이행

④ 교육적이고 다양한 체벌 대체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시행

(2)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추진에 대한 연수 및 계도

③ 교직원 연수 실시

- 존경받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자체 연수 실시
- 체벌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자체 연수 실시
 - 체벌시 학생의 인격 존중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 금지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체벌 금지
 - 단체 행동시 사고발생 예방차원에서의 군대식 집단 규율 적용 금지

- 체벌 없는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

나. 학생 학부모 계도

- 체벌 관련 규정의 내용 주지/ 체벌의 제한적 허용 취지 홍보

다. 체벌 고충 처리 체제 구축

- 체벌 고충 처리 부서 지정 운영/ 교장, 교감의 고충 처리 현황 수시 확인

(3) 인격존중의 학생지도 방법 정착

- 민주적 학생지도 방법 관련 자체연수 강화

- 교수언어 순화 및 바른 언어 사용
 - 각종 교원연수 과정에 인격존중 학생지도 방안 강좌 개설
 - 학생 지도는 감정을 배제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
4. 유의사항
- 체벌 없이도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로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

III

. 외국의 학생체벌관련 입법례

1. 미 국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육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Massachusetts 주, New Jersey주, Maryland주를 제외한 47개 주에서 주법으로 체벌을 명문으로 합법화 하고 있음. 이 중에서 극히 소수의 주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통고를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음.

Virginia주의 학교 교육법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및 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이 그 권한에 의해서 학생에게 적절한 체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Delaware주에서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원 및 행정가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학교의 관리 하에 있는 아동과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율을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이 권한에는 필요에 따라서 체벌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시킨다고 규정함.

Florida, Georgia, Montana주에서는 학생들을 체벌할 경우 반드시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Georgia주의 경우에는 “체벌은 각 교육위원회 고용한 교장, 부교장 또는 교장이나 부교장이 지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더욱이 교장, 부교장 또는 교장이나 부교장이 지명한 입회인은 체벌이 행사되기 전에 대항 학생이 있는 앞

에서 반드시 체벌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Tennessee주나 Missouri주의 경우 체벌에 대해 주법에 의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①Tennessee주의 가벌카운터 학교의 경우 규칙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교장이 ②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③ 체벌을 행사할 수 있다. 체벌은 제3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은 학생에 대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체벌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비공개로 다른 교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당일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상소심의 재판결과를 보면, 미국 판례의 경우 약 6할 이상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교사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음.

2. 독일

독일에서는 과거부터 체벌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체벌관련 판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Niedersachsen주 교육부 지침은 징계권 가운데 소녀에 대한 체벌은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고, 소년에 대해서도 ‘극히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극도의 난폭성, 심한 반항성)’에 체벌 사용을 국한시킴. 또한 체벌도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그냥 한 대 내리치는 것, 뺨을 꼬집는 것, 귀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후에 구서독의 모든 주에서는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Hessen주는 1972년의 일반학교법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Baden-Wuerttemberg의 학교법 제89조 제2항의 1에서는 “체벌은 배제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Hamburg주에서도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

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태도의 관념을 손상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한다”라고 명문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3. 영 국

체벌에 관한 규칙은 1944년 교육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교육당국이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1977년 당시 104곳의 지방교육당국 중 68곳의 지방교육당국이 체벌행사의 권한, 방법, 이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36곳의 지방교육당국은 교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체벌행사의 권한 규정에 관해서 13개 지방교육당국에서는 교직경험이 3년에 미달하는 자는 체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런던의 지방교육당국에서도 교직경험이 1년 미만인 교사는 체벌행사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또 43개의 지방교육당국에서는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여교사에게만 인정하고 있음. 거꾸로 남학생에 대한 체벌행사는 남교사에게만 한정한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도 있으나 그 수는 지극히 적음.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학생의 명예심을 손상하거나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측면에서 체벌은 일반적으로 ‘罰室’이라는 방에서 행사되고 있음.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체벌이 금지되어 왔음. 1795년에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초등학교내 관련규칙안 제5조에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1887년에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기준 학교규칙 제19조 “초등학교 교원이 사용하는 징벌은 평가벌, 질책, 유희시간의 단축, 교원 감독하에 학교체류, 정학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규정과 제20조 “여하한 체벌도 엄금한다. 교원이 학생을 ‘너’라

고 부르는 것도 금한다”라는 규정에서 엄격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5. 일 본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도 및 아동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음. 단,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라는 명문으로 교사의 학생체벌 행위를 교육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음.

6. 기 타

캐나다는 8개주에서는 금지, 5개주는 허용되고 있지만 체벌을 교육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체벌한 학생의 위반 행동과 체벌 경위를 기록 보관하고 장학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허용됨. 일정 기간 이상 지각하는 학생에게는 엉덩이 체벌도 허용되지만 여학생 체벌은 금지되어 있음.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락아래 손바닥,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도록 하고^{cm} 있음. 여학생 체벌과 집단 체벌, 학습 실패나 숙제를 안 한 경우의 체벌은 금지됨.

태국은 학교 규율위반 행위, 학생 본분 이탈행위에 한해 제3자가 없는 닫힌 공간에서 엉덩이에 지름 0.7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로 6대 이내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상의 외국법제 참고문헌 :

[2005년 8월 전해린, 학생체벌의 정당성의 기준과 그 한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 97-1호]

IV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

1. 교육인적자원부의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2006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밝힘. 그러나, 대안 없는 체벌금지가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2006년 8월 19일, 국제신문]

2. 의원입법안 상정

(1) 입법안 개요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교육당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10인의 위원이 2006년 3월 13일 초·중·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2) 입법안의 내용

초·중·고등교육법의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과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는 체벌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06년 3월 30일, 최순영, 初 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V

.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에 대한 찬반론

1. 체벌금지 법제화 찬성의견

(1) 체벌의 불필요성 및 역효과

-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체벌의 계속적인 사용은 문제행동의 악화를 초래 할 것임.
- 체벌은 학생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탐구정신을 억압함으로써 학습과정에 지장을 초래함.
- 학창시절 체벌을 당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지내며 교육계를 불신하게 됨.
- 체벌을 받은 학생은 교사와 사회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고 폭력을 학습하게 됨.
- 체벌 자체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떨어지고, 오히려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반항의식이나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음.
- 체벌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생이 교사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이 체벌을 문제 삼으면 ‘왕따’시키고 나아가 ‘문제아’로 낙인 찍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또 내신 등 성적관리를 주도하는 학교 측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선불리 폭로할 수가 없게 됨.

(2) 체벌의 인권 침해성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 체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임.

(3) 체벌의 합리성 결여

- 체벌은 상당히 교사의 감정에 좌우되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체벌은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음.
- 교사의 착오나 오해로 인해 체벌이 잘못 행해졌을 때, 되돌릴 수가 없음.
- 학생을 선도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체벌’이라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4) 체벌 교사의 자질결여

- 체벌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음.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교사는 매를 들지 않음. 체벌을 일삼는 교사는 그 자질을 의심하여야 함.

(5) 체벌의 법제화 필요성

-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지 않으면 음으로 양으로 체벌이 만연할 것임
-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면 학교마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임.

이상의 찬성의견 참고문헌 :

[2005년 8월, 임종률, 체벌의 법적근거와 한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8월 19일, 국제신문 기사참조]

[2006년 8월 20일, 구굿닷컴 기사참조]

[2006년 6월 29일, 시민의 신문 기사참조]

[2006년 9월 1일,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기사참조]

[2006년 8월 30일, 경향신문 기사참조]

2. 체벌금지 입법화 반대의견

(1) 체벌의 장점

-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학생들은 체벌을 통해 자기규율을 배우게 됨.
-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벌을 사용하게 되면 행동변화를 야기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을 바른길로 이끌고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게 해야 함.
- 다른 학생들에게 비행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음.
-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에 적절한 수준의 체벌은 학생지도에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교사의 사랑의 매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일 수 없음.
-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학생의 인격성장을 지도하는 것이기에 학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한 상황도 있음.

(2) 체벌의 불가피성

-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징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학생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도수단이 없는 상태임) 한계로 인해, 교사의 훈계 등 지도나 벌점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차라리 체벌이 낫다고 볼 수 있음.
- 체벌은 학교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교사 당 학생 수, 학급 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현행 교육 여건 하에서 체벌은 불가피함.

-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체벌이 선택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임.

(3) 체벌금지 법제화의 부작용

- 교육부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로 1998년에 폐지됐던 정학(停學)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체벌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을 정학시키는 것은 학생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임.
-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면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교사들이 학생 선도를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임.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진 교사임.
- 체벌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현직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임.
- 체벌을 금지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체벌금지가 법제화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될 뿐더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 될 위험성이 높음.
-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도 체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이상 체벌금지 법제화 반대의견 참고문헌 :

[2005년 8월, 임종률, 체벌의 법적근거와 한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년 8월 19일, 국제신문 기사참조]

[2006년 8월 23일, 한겨레 신문 기사참조]

【
학교촌지근절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I

. 학교촌지 관련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1. 학교촌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촌지의 본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학교에서의 촌지는 본질의 의미를 상실한 채 각종 폐단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임. 해마다 학교촌지로 인한 갖가지 문제들이 증가해 가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학교촌지로 인한 신고 및 적발 건수는 1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계	징계	인사조치	경고	주의	반환조치	불문
128명	9명	3명	4명	59명	48명	5명

- 적발기간 : 2004. 5. 6.~ 2004. 5. 15.

적발 : 57명, 신고 71명

[2006년 5월 3일, 부패방지위원회, 촌지제공사례분석, 보도자료 참조]

이러한 폐해를 막아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스승의 날을 재량휴일로 지정하기에 이르게 됨. 즉, 스승의 날의 의미가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의 의미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루 쉬는 날의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촌지를 근절하기 위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에 『학교촌지근절법안』이 2006년 9월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음.

2. 학교총지의 원인과 제재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1) 학교총지와 스승의 날의 관계에 대한 설문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매년 5월 ‘스승의 날’이면 반복되는 학교총지 등을 둘러싼 교육 부조리 논란이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전국 교원 2069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업일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결과 전체 교원 중 56%가 휴업일로 지정하기를 원함. 23%는 학년 말인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자고 했으며,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의견은 15%로 나타남.

[2006년 5월 1일, 동아일보 기사참조]

잡링크(www.joblink.co.kr)와 여성신문이 2006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648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무의 총지 근절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고,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6.0%에 달해 직장인 절반 이상은 스승의 날 휴무가 학교총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0대(41.7%)보다 30대(52.6%), 40대 이상(64.5%)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일수록 학교총지 근절을 위해 스승의 날 휴무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스승의 날 휴무와 학교총지 근절이 무관하다’는 응답은 38.3%를 차지했으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응답은 9.6%로 나타남.

[2006년 5월 15일, 잡링크 홈페이지(<http://www.joblink.co.kr>) 참조]

(2) 대입전형시 내신 반영비율과 학교춘지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 결과

2008년 대입전형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50%를 넘으면 춘지가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39.8%가 '매우 그럴 것'이라고 답함.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응답은 27.8%를 차지했으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14.2%로 나타남. 반면 '오히려 춘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9.0%에 이름.

[2006년 5월 15일, Career Daum(http://www.careerdaum.com/pr/view.asp?id_num=2480&list=1)]

(3) 학교춘지 제재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춘지에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승진이나 보수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답이 44.7%로 나타남. 특히 21.2%는 춘지수수 교사를 형사 처벌하는 날이 하루 빨리 와야 한다고 답변했고 32.4%는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스승의 날에 자식의 현재 교사나 본인의 옛 스승에게 선물이나 춘지를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9%가 긍정적으로 답함. 43.5%는 '선물이나 춘지를 안 하겠다'고 답했지만 '작게라도 하겠다'(42.2%), '꼭 드리겠다'(6.8%) 등으로 집계됨. 학부모의 경우 '선물이나 춘지를 주지 않겠다'(58%)는 응답이 '작게라도 주겠다'(27.3%)보다 높게 나타나 학부모가 오히려 춘지나 선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과 현금의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액수라도 줘서는 안 된다'(46.3%)가 가장 많았고 '3~4만원'(19.5%), '5~9만원'(15.9%), '1~2만원'(11.2%)으로 결과가 나타남.

[2006년 5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참조]

Ⅱ

. 학교촌지에 관한 현행제도

1. 개 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 30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2005년 12월) 및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2006년 2월)에 따라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문을 작성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함.

2.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내용

(1) 기본방향

-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금품 향응수수 시 징계기준 적용
- 아래의 징계처분 기준에 비해 강화된 기준 설정은 가능하나, 완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함

(2)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비 위 유 형	금 액 수 수 행 위	10만원	1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
		미만	이상 100만원 미만	이상 300만원 미만	이상 500만원 미만	이상 1,000만원 미만	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파면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제 3 장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하고, 위법 부 당한 처분을 하 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하고, 위법 부 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2006년 5월 30일,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수
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의견

1. 개 요

학교촌지가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 학교촌지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하여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006년 9월 『학교촌지근절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2.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필요성

학교촌지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급기야 스승의 날 휴교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

이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등 교육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촌지를 ‘포괄적

뇌물'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고 수수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촌지수수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대두함.

3. 「학교촌지근절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원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 간에 주고받는 학교촌지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제고를 통한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을 위하여 학부모 및 교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누구든지 학교촌지 수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학교 및 대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9조).

아. 학부모나 교원이 학교촌지를 수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학교촌지의 근절을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11조).

[2006년 9월 13일, 진수희 의원 대표 발의, 학교촌지근절법안]

IV

. 「학교춘지근절법」 제정 의견에 대한 찬반론

1. 「학교춘지근절법」 제정의 논점별 찬반론

(1) 현행법으로의 해결가능성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 현행법으로는 학교춘지 방지에 미흡

현행 제도는 교원에 대해서만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만 있을 뿐,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음. 춘지수수와 무관한 교사의 명예와 교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선량한 학부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수준에서 쌍방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음.

[2006년 6월 14일, 강정길, 학교춘지근절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춘지관행이 갖는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임. 춘지를 받은 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징계 규정 등을 통하여 징계를 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춘지관행에 비추어 징계되는 건수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도 매우 낮음.

또한, 형법적으로도 춘지를 뇌물수수로 처벌하기가 어려움. 뇌물이라 함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춘지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예외적으로 춘지수수가 처벌되는 경우는 춘지를 받은 교사가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성적조작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춘지를 받고 그 대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임. 이런 현행법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춘지관행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임.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반대론 : 현행법으로도 해결가능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며, 법만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현행법으로도 촌지수수는 처벌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촌지 안받기 운동을 전개해 현재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음.

[2006년 5월 16일, 이민숙, 동아일보 기사 참조]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 설치, ‘교직원복무심의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촌지의 불법성에 대한 의식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 학교촌지의 불법성에 대한 의식개혁 필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함. 학부모 및 교사가 촌지관행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욱 특별하게 대우 받기를 원하는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의식개혁이 필요로 됨.

우선 촌지를 주고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촌지를 주는 것을 하나의 관행이며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교사들도 촌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촌지를 교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함으로써 촌지를 주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케 하여야 하며 교사들도 촌

지를 수수하였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야 함.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반대론 : 학교춘지의 불법의식은 우리 관행에 배치

법안은 춘지를 주고받는 것을 당연히 불법이라는 인식 위에서 작성되었지만, 법제정자의 진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춘지를 주는 것을 예외 없이 범죄라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맞지 않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있어서 범죄성립요건의 관건이 되는 ‘직무대가성’이라는 개념 요소는 대폭 완화되든지 삭제되어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강경근, 학교춘지근절법안의 당위성과 형평성 문제,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3) 학교춘지는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 처벌의 처벌 필요

학교현장에서 춘지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청탁적인 성격을 가짐. 즉 춘지를 주고서 학생에 대한 특별대우를 청탁하는 것이고 교사는 이에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교육적 병폐를 생산하고 있기에 춘지는 불법이며 이는 처벌하여야 함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반대론 : 처벌의 처벌 필요성 재고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것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금품 및 향응’이지, ‘춘지’가 아님. 따라서 ‘학교춘지근절법’에서 ‘학교춘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학교에서 교원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 간에 주고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촌지’에 대한 잘못된 정의 일뿐 아니라, 감사의 정성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사고라는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됨. ‘학교촌지근절법’이 제정된다면 아마도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임.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부의 비리 때문에 전체 집단을 문제 삼아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교에선 학생-학부모-선생님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법으로 재단한다면 사실상 교육적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

[2006년 5월 16일, 한재갑, 동아일보 기사 참조]

(4) 명확성의 원칙 충족여부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 명확성의 원칙 충족

촌지가 불법이고 처벌대상이 된 이상 일정 액수를 기준으로 그 처벌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금품수수 등이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액수에 상관이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촌지의 개념이 넓어진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명확성의 원칙은 일반인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볼 때,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식사를 대접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2) 반대론 : 명확성의 원칙 위배 가능

·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교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에 주고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라는 ‘학교촌지’의 개념이 너무 넓고, 특정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모든 ‘주고받는’ 금품을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할 수 있음.

법안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향응’의 정의 역시 불명확한 개념이고, ‘근절’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언론적이라 할 수 있음.

[2006년 6월 14일, 강경근, 학교촌지근절법안의 당위성과 형평성 문제,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5) 비례성의 원칙 충족여부에 관한 논의

1) 찬성론 : 비례성의 원칙 충족

학교구성원간의 신뢰제고를 통하여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촌지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위해 촌지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지 않음. 뇌물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즉, 사회적 의례의 범위에 속할 것처럼 생각되는 작은 금액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것임.

교육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촌지는 분명히 직무의 대가성을 띠고 있지만, 그 직무의 대한 대가성을 형사소송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처럼 촌지에 대가성을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비례성의 원칙 위배 가능

총지를 준 학부모만 형사상 소추를 받게 하고, 교사는 과태료에 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학교총지가 형사상 불법이라면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교사) 역시 형사상 처벌함이 마땅함. 형벌을 최소화하려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총지를 준 학부모 역시 과태료에 준하는 규제를 함으로써 비례성의 원칙을 더욱 준용하여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노현중, 학교총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총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학교총지근절법 법제화에 발전적 제언

(1) 입법을 통한 관련 기구의 설립 필요

현행 교원징계 집행주체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내 교원징계위원회,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서 교원징계를 하고 있지만 총지수수에 관하여 지금까지 그 징계가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징계 외에도 학부모의 형사처벌,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구가 필요함.

법적 근거 있는 특별기구의 존재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제한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임.

[2006년 6월 14일, 전성민,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총지근절법안 제정, 「학교총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 국민의식과 외국의 입법례 재검토 필요

총지수수를 형사처벌 할 만큼의 불법의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입법의 정당성 논란에 하나의 증명원이 될 것임.

다른 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입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강경근, 학교춘지근절법안의 당위성과 형평성 문제,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3) 춘지 개념의 확대 필요

학교춘지의 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함. 학교춘지를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 교재업체 등 학교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 및 향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006년 6월 14일, 노현중, 학교춘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재고

과거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한 ‘차과라치’ 등에서 보듯이 포상금 지급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 포상금 지급 문제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

[2006년 6월 14일, 노현중, 학교춘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5) 학교장의 춘지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무 포함

학교춘지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춘지 관행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에 소극적인 학부모와 교사들을 강력히 이끌고 가야 하기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춘지의 불법성에 대해 고지하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임.

[2006년 6월 14일, 노현중, 학교춘지근절법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춘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6) 자진신고를 “형의 감면”으로 변경

불법적인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제정 목적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 형을 면제할 경우 극단적으로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형의 면제’가 아닌 ‘형의 감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7) 학부모에 대한 벌칙 불합리

형법상 뇌물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학교촌지근절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이 제공된 금품 및 향응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품 및 향응과 관련한 학교내외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됨.

[2006년 6월 14일, 백복순, 학교내외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노력,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고 : 진수희 의원 발의(안)>

학교촌지(寸志)근절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 간에 주고받는 학교촌지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제고를 통한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촌지(寸志)”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p>같다) 학부모 또는 교원 학생(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에 주고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말한다.</p> <p>2. “학부모”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를 말한다.</p> <p>3. “금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질적 이익을 말한다.</p> <p>4. “향응”이란 음식^④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②	<p>제 3 조 (국가 등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촌지의 수수(授受) 및 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학교촌지가 수수되는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5 조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촌지 수수행위 신고접수 2. 학교촌지 수수 사건^①조사 ② 3. 학교촌지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촌지의 수수 및 그 근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 6 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 원 ③ 3. 학부모 ④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6.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7 조(학부모의 의무) 학부모는 본인 또는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촌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 8 조(교원의 의무) 교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학교 손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 9 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학교손지 수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학교 및 대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손지 수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①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지체없이 대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학부모가 교원에게 학교손지를 제공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학교손지를 받은 사실을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의 처분을 면제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대책위원회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2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과태료)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제공받은 금품 또는 향응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더불어 잘사는 사회 확립을 위한 입법 의견

I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입법 의견

. 아동학대 관련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전국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6,99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 일반상담건수는 2,118건(30.3%)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임.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건수

(단위 : 건, %)

구분 \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2,606(63.1)	2,946(71.7)	3,536(71.0)	4,880(69.7)
일반상담 건수	1,527(36.9)	1,165(28.3)	1,447(29.0)	2,118(30.3)
계	4,133(100.0)	4,111(100.0)	4,983(100.0)	6,998(100.0)

또한, 200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4,880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891건으로 7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잠재위험사례 434건(8.9%), 일반사례 555건(11.4%) 이었음. 3,891건으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사례는 592건(15.2%), 단순아동학대사례는 3,299건(84.8%)으로 단순아동학대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4년 학대받은 아동 수

(단위: 건, 명)

아동학대사례건수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	재신고 아동 수	중복신고 아동 수
3,891건	3,461명	342명	88명

[2005년 10월,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박순자의원) 검토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아동학대 관련 현행법의 규정내용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의 내용

조 문		주요내용	비 고
제2조	용어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29조	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설치	국번 없이 1391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할 의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가능	아동학대예방센터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자이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내지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27조	응급조치 의무 등	현장출동,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III
[2005년 11월,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아동의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아동학대 관련 외국법의 규정 내용

1. 아동학대방지법의 별도 입법여부

국 가	법 명	분리여부
한 국	아동복지법	미분리
미 국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분 리
일 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분 리
대 만	아동청소년복지법	미분리
호 주	아동 청소년법	미분리
영 국	아동법	미분리

캐나다	아동가정서비스법	미분리
[2005년 10월,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박순자의원) 검토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2. 아동학대 관련 각국의 입법례

(1) 미 국

미국은 1962년을 전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사회사업적 연구조사의·결과 아동학대신고법을 입법화 함. 미국의 아동학대신고법의 제정을 위한 모델은 미국아동국(U.S. Children's bureau), 미국박애아동과(Children 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의 약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주정부협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이중에서 미국 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턴 D.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신고법이 입법화됨.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됨.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2) 영 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함.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협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는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됨.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함.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함.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킴. 관련 부서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짐.

1968년에 제정된 스코틀랜드 사회사업법(Scotland Social Work Act)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함. 지방당국은 가정, 위탁가정,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책임지고 있고, 아동보호위원회는 각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무, 각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제정함.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3) 대 만

1973년 아동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제정함. 이 법령의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동을 만 12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
-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학대 아동의 법적 조치 내용
- 24시간 이내의 신고의무와 신고의무자(의사, 변호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학자, 교사, 보육사, 경찰, 사법요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학대행위자와 학대유형 규정
- 부모나 양육책임자의 아동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협한 노동 금지
- 아동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방치 금지
- 주무관청, 위탁기관/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학대가정 방문 조사권 부여
- 친권/감호권 금지에 따른 법원에의 신청신고
- 부모 이혼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아동의 보호 위탁
- 아동을 악의로 범죄에 이용한 경우의 가중처벌

- 벌금형

- 학대부모의 교육 및 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벌금형

[2002년,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복지법]

(4) 호 주

호주는 1993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998년에는 1989년에 제정한 아동과 청소년법을 개정하여 의사, 간호사,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전문집단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초석을 마련함.

호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s Centres)나 주정부(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사정,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이후 개입을 막고 있음.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서비스만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전반적인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개입은 주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음.

아동과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8)에서는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등의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벌점 200점(penalty units)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음.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일 본

일본은 1933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었다가,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법이 제34조 아동학대금지조항만을 남겨놓은 채 폐지됨. 이후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차원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이 수립되었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0년 5월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에 개입하기 시작함.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시 아동을 일시보호, 시설보호, 위탁보호로 분리하고 있음. 아동의 격리보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상담소의 자체 사례회의 판정 및 판정회의에 의존함.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폭행, 아동에게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의 심신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보호자가 아동을 감호하는 일을 현저하게 게을리 하는 행위, 아동에게 현저하게 심리적 외상을 끼치는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법상의 법적조치로 친권상실의 권고, 관리권상실의 권고, 실권선고의 취소, 친권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등이 있음.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IV}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동학대방지 관련 입법의견

1. 제도상의 개선의견

(1) 아동학대 관련 기준 제시

아동학대 관련 현행법은 명확한 아동학대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아동에게 행하여지는 유해한 행위만을 열거하고 이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하여 아동학대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2) 아동학대 신고체계 일원화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신고의무의 강제 및 신고의무자 신변보장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미신고자 모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므로 모든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함.

(4)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의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 실제적으로 이러한 연계와 협력이 효력을 받기 위하여서는 법적 명기가 필요함.

(5) 응급보호기간의 연장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8조에서는 3일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가 때로는 3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사례에 대한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연장이 필요함

(6) 피해아동 후유증 치료기관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를 가능케 하여서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입소기간과 관련하여 제11조 “시설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서 입소기간의 만기를 아동이 만 18세에 달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아동이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며, 그 밖에 아동시설의 입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의 규정이 필요함.

(7)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의 보호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인의 선임조항이 있음. 이에 더 나아가서 아동이 반복되는 진술요구와 성인 가해자 중심의 신문방법 및 조사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재차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과 증거보전 신청에 의하여 1-2회 진술만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

(8) 아동의사의 반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 인근의 수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모로부터 격리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와 더불어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신고를 청구할 때에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므로 아동이 자신의 처우결정에 참여케 하여야 함.

[2005년, 전경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1)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법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개인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 현상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명들게 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행위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36명이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005년 7월 4일 국회에 제출함.

(2)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외상의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신체학대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학대 및 방임한 보호자에 대하여 피해아동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국가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긴급전화의 운영 등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2005년 7월 4일,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참고 : 박순자 의원 발의(안)>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를 말한다. 4. “아동방임”이라 함은 보호^①자가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 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이하 “아동학대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보호하며 학대 및 방임의 위기에 처한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등에 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운영 2. 아동학대등의 실태 조사 3.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② 4.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③ 5.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④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p>제 4 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 5 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①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 6 조(아동학대예방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2. 초 중 고등학교의 장
 3.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제 2 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② 제 7 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등을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①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8 조(아동학대등의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등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등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7. 「모 부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모 부자복지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또는 모 부자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여성폭력긴급전화의 장 및 그 상담원, 같은 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9.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11.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p>③</p> <p>②</p> <p>②</p> <p>②</p>	<p>12.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그 종사자</p> <p>13.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p> <p>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 9 조(아동학대등의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응급조치의무 등) 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행한 자(이하 “아동학대등행위자”라 한다)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등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11조(사법경찰관리의 동행 및 동석 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기관 내에서의 조사시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및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3조(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피해아동의 의료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아동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피해아동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p>제15조(면회의 제한)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학대 및 방임한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에</p>
-------------------------------------	--

는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그 보호자에 대하여 피해아동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친권 제한 및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제출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등의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등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게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9조(아동학대등행위자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그 교육 및 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3 장 아동학대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② 제20조(보조인의 선임 등)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죄(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또는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시 피해아동의 증인 채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경우 아동의 정서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피고인 또는 아동학대등행위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 및 그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조사·심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기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등의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2. 아동학대등의 예방 관련 조사 및 연구
3. 아동학대등의 예방사업 평가
- ② 4. 아동학대등에 관한 전산시스템 운영
5. 해외 아동학대등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6. 그 밖에 아동학대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등 긴급전화 운영
2. 피해아동, 아동학대등행위자, 아동학대등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이나 관계인에 대한 조사
- ③ 3. 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 의뢰
4. 피해아동, 아동학대등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연계
5. 아동학대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독)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4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제3호의 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

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피해아동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별 칙

제27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0조(미수범) 제27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 3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 4 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32조 중 “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 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 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를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보호조치”로 한다.
- 제38조 중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를 “아동복지사업”으로 한다.
- ②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第40條 또는 第41條 ”를 “제41조”로 한다.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제2조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를 위반한 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의 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41조,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9조”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I

애완동물등록제에 관한 입법의견

애완동물 현황 및 문제점

외국에서 수입되는애완견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10만 2천 4백 마리, 금액으로는 170억원에 해당하는 애완견이 수입되었음.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에 1만5,699마리, 2005년에 1만7,577마리의 애완동물이 보호시설 신세를 진 바 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조되거나 포획된 유기동물의 수를 집계한 것일 뿐, 실제로 발생한 유기동물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임. 실상 서울시에서는 매달 1000여 마리의 애완견이 버려지고 있고, 2005년 말 현재

유기된 개와 고양이는 6만여 마리에 이르며, 포획인건비와 사료비, 약품비 등 관리비용이 57억에 달하고 있음.

[2006년 4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영호 의원 인터뷰 내용 참조]

[2006년 8월 9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홈페이지 참조]

[2006년 4월 18일, 이영호,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영호의 입장,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www.basemi.net) 참조]

. 외국의 애완동물등록제 관련 입법례

1. 미국(샌프란시스코)

개를 등록하여야 하는 시기는 대개 생후 6개월 또는 영구치아가 나거나 취득한 지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함. 등록비는 주로 1년을 기준으로 함. 이를 통하여 위험한 개를 판명하고, 등록비로 잔인한 행위, 학대, 유기와 무관심을 조사하고, 유기견들을 새롭게 입양시키는 동물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충당함.

애완견의 온라인 등록을 의무화 함. 시의 모든 거주자들은 태어난지 4개월 이상 된 개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기르는 경우에는 시보건당국에 애완견 허가를 받아야만 함. 등록을 하지 않고 개를 소유하거나 기르는 것은 불법이며, 소정의 등록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30일 전에 새로 등록을 해야만 함. 1년 기간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24달러, 2년은 45달러이며, 12개월 이상된 개에 한하여 3년은 66달러임.

2. 독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개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개 보유세를 지불하여야 함.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보유세금조례에 의거하여 정하여 짐.

생후 6개월이 지난 개를 양도 받은 경우, 양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금은 개 한 마리 141유로, 두 마리일 경우

마리당 171유로, 세 마리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마리당 201유로를 지불하여야 함. 맹인안내견 등 안내견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감면해 줌.

3. 오스트레일리아(퀸즈랜드 브리스번시)

생후 8주 이상인 개는 등록시켜야 하는데, 등록은 매년 갱신되고, 등록증이 개목걸이에 붙어있어야 함. 중성화수술 및 보종훈련을 받은 경우 등록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개 한 마리당 1년 72, 불임수술 받은 개 한 마리당 25, 위험한 개 305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지불하여야 함.

4. 뉴질랜드(크라이스처치시)

개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개가 생후 23개월이 지난 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은 매년 갱신됨. 불임수술을 한 개와 직업견의 경우 감경함. 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되면 200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함.

맹인안내견, 청도견의 경우 등록비가 면제되며, 중성화수술을 한 개는 1년^에 100뉴질랜드 달러, 일반개는 110뉴질랜드 달러, 위험한 개로 판명된 경우에는 150 뉴질랜드 달러를 지불하여야 함.

[2003년 11월, 김수진,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문제, 한국법제연구원]

.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애완견을 비롯한 애완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17인의 의원들이 2006년 4월 12일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취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년 9월 4일)에서 제출한 바 있음.

2. 개정안의 내용

(1) 이영호의원의 동물보호법의 일부법률개정안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등록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조 : 이영호의원의 개정안>

<p>제4조의2를 다음과^①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보호법개정안</p> <p>② 제 4 조의2(동물의 등록)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자 하는 동물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①</p> <p>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제10조의2(수수료)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부담금의 부과 징수) 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 부과 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006년 4월 12일, 이영호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중 일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이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음.

<참고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개정안>

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중 일부

② 제4조의2(동물의 등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006년 9월 4일, 농림해양수산부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IV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애완동물등록제 논의 개요

애완견등록제의 도입에 관한 입법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중 찬반론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애완견등록에 부가되는 ‘부담금’에 관하여서임. 아래에서는 애완견등록제의 도입의 주된 논거가 되었던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후 논점별로 찬반론을 정리하였음.

2.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주장의 논거

(1)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강화 필요

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등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력의 투입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현행법 내에서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이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2) 전염병, 환경오염 등 사회적 책임차원의 부담금 필요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집중형 국가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애완동물의 오물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드러나

지 않아서 그렇지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 애완 동물 한 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게 될 경우 오물 발생은 피할 수 없음. 현재 가정에서 애완동물의 오물은 일반쓰레기봉투나 하수도로 별도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부담금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이처럼 애완동물을 사육할 경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전염병 유발 요인도 있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임.

(3) 유기동물 문제해결에 도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도 등록제를 통해 관리가 된다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임. 이는 동물보호적 측면에서 애완견과 애완견의 소유주의 관계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 또 적당한 운동 등을 보장하는 등의 동물학대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상 도입주장 논거 참고문헌 :

[2006년 4월 18일, 이영호,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영호의 입장,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www.basemi.net) 참조]

3. 애완동물등록제 도입관련 논점별 찬반론

논점	도입반대론	도입찬성론
일률적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처럼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은 몸집이 작은 치와와에서 덩치 큰 시베리안 허스키까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차등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소동물이든 중동물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음. 예를 들어서 개를 목욕 시키는데 사용하는 샴푸비용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쓰는 것의 두 배 세 배정도 가격임. 또한, 그러한 샴푸의 사용시 환경오염지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p>목적견 등 구분 가능성</p>	<p>시골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키우는 애완견까지 전부 부담금을 물릴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애완 목적, 식용 목적 등 그 사육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함.</p>	<p>애완견의 등록 시 목적별 분류는 가능할 것임. 맹인안내견, 청도견 등의 안내견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할 것임.</p>
<p>애완동물의 환경오염</p>	<p>애완동물의 오염행위가 유기견이나 방치돼 있는 고양이, 비둘기 똥 등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 주인이 보호하고 있는 애완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음.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범위까지 모두 포함, 몽똥그러 부과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임.</p>	<p>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집중형의 국가에서는 과밀한 인구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유발 물질만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엄청나지만,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물어야 할 비용임이 분명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용까지도 일반 국민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유기견의 양산여부</p>	<p>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많아지게 될 것임.</p>	<p>처음에는 유기견이 증가할 지 모르나 점차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기견 숫자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임.</p>
<p>행정인력 낭비여부</p>	<p>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p>	<p>국민들의 자진하여 등록할 것으로 기대함. 큰 인력수요나 행정인력 낭비는 없을 것임.</p>
<p>대안의 목적달성 가능여부</p>	<p>차라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때 확실하게 벌금을 물리는 등 오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더 중요할 것임.</p>	<p>환경오염에 따른 벌금부과 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금도 시행 가능함. 그러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궁극적으로 환경오염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음.</p>
<p>참고문헌</p>	<p>[2006년 4월 18일,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p>	<p>[2006년 4월 1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영호 의원 인터뷰 내용 참조]</p>

제 5 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I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개요

법무부는 기업의 책임경영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2006년 10월 4일 입법예고 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음.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논 점	개 정 전	개 정 후
전문경영인의 법적 지위	없 음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집행임원은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
주주대표소송의 범위	자기회사만 가능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으로 자회사까지 가능 (단, 직접 소유 지분을 50% 초과시)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유형	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 외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의무 추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이사 본인	이사 및 이사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이사의 책임 한도	무한책임	경미한 부주의한 경우,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은 면제
의결권 행사 방법	주총행사장 직접 참석	인터넷 전자투표 가능
주식회사 창업 자금	최저 5,000만원	최저 자본금제 폐지
주식 발행	100원 이상 액면 금액 표시한 주식만 발행	액면금액 없이 주식발행 가능

[2006년 10월 4일, 법무부, 상법개정안 참조]

이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하여 다양한 입법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분야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집행임원제의 도입’ 및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세 분야라고 할 수 있음.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위의 세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입법의견을 정리하였음.

·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 이중대표소송제의 의의

(1) 이중대표소송제의 개요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일컬음.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임.

이중대표소송이란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이하 종속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함.

현행법 하에서는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임. 따라서 종속회사의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회사의 주주는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영진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회사로 귀속하게 됨.

그러나 종속회사나 종속회사의 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는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회사의 주주들은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니어서 직접적

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임.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지배회사 주주들은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6월 9일, 박양균,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월간조선]

(2) 상법 개정시안의 관련 조문

2006년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자회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있음.

①

상법 일부법률개정안

②

제406조의2 (이중대표소송 등)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6조를 준용한다.

2. 이중대표소송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일 본

일본에서는 1997년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는 종속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배회사의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지배회사 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주보호를 위해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이에 1999년과 2001년에 다중대표소송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입법화가 무산된 이유는 지배회사의 사업전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이사에 위임한 것이므로, 만약 그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종속회사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므로 당

해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2) 영 국

영국은 한 때 회사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영국의 법률위원회(Law Commision)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법제화를 거부함.

(3) 미 국

미국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례와 부인한 판례가 공존함.

1)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한 판례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한 판례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엄연히 분리된 법인격을 중시하여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

- Crow v. Context Industries, Inc., 260 So. 2d 865(Fla. Dist. Ct. app. 1972) : 원고는 A사 주주였으나 A사가 B사의 100% 종속회사로 되면서 A사 주식은 B사 주식으로 교환됨. 원고는 주식교환 후 발생한 종속회사의 자산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A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동시소유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

- Untermeyer v. Valhi, Inc., 665 F. Supp. 297(S.D.N.Y. 1987) :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

2)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례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사실상 법인격이 부인되어서 실질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거나, 주식교환 등으로 인해 주주의 지위가 변동되어 실제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이

아닌 주주대표소송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함.

- *Brown v. Tenney*, 508 N. E.2d 347 (Ill. App. 1 Dist. 1987) : 두 회사가 형식상 별개의 기업이나, 부정행위를 한 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남용할 경우에는 법인격을 무시하고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 *Gaillard v. Natomas Co.* 173 Cal. App. 3d 413, 219 Cal. Rptr. 74(Cal. App. 1 Dist. 1985) : A사의 주주인 원고가 A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주식교환에 의해 A사는 B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원고는 B의 주주가 됨. 이에 대해 법원은 당해 주식교환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주식교환 후에도 지배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권한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

(4) 독일

독일에서는 1970년대 ‘ITT사건’(BGHZ 65, 15)이 있었음. 상법이건 주식법이건 명문의 성문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제기를 허용했던 것은 아니며 다만 판례로 모회사-자회사-손회사로 이어지는 콘체른구조에서 자회사 소수주주가 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이었음. 독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소를 허용하였고 동시에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 콘체른대위소권(actio pro concerno)을 판례법으로 인정한 첫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이중대표소송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참고자료 :

[2006년 6월 9일, 박양균,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월간조선]

[2006년 7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년 8월 24일, 김정호,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 법률신문]

3. 우리나라의 이중대표소송제 관련 판례

우리나라에서의 이중대표소송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음.

(1)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은 2004년 판결을 통해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 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구를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와 같이 상법 제403조 이하의 단순대표소송의 제기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이사가 속한 회사 주주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판시

(2)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판례

고등법원 2003년 판결에서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지배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고, 종속회사 주식을 여러 회사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지배회사마다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면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

[2006년 9월 12일, 전삼현, 이중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워크숍자료]

4.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반대론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공식 성명의 발표가 있었고, 다양한 경제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음. 이의 주된 골자를 묶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회사의 법인격의 부인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와 그 소유자를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본

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회사법에서 인정해 온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 이처럼 법인격이 부인되면, 모자회사 사이의 회사 재산 구별의 혼란으로 인한 주주, 채권자 및 거래상대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미약

지배회사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주들은 소송비용 외에 시간 등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비상장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어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가 미약해 질 수 있음.

3) 남소 우려

변호사들은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시민단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상장사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짐.

4) 경영위축

비상장사 주식을 소유한 지배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사의 경영진들은 소송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게 될 것임.

5) 지주회사로 전환 곤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되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소송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런 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재고할 것임.

6)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을 저해

모회사는 소송부담을 우려하여 자회사의 경영활동과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관리해야 하며, 자회사 역시 중요 안건에 관해 모회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려는 경향이 커져 독립적 법인체로서의 관계 약화시키며, 모회사에게 과거 구조조정본부와 같은 역할의 강화를 요청하여 기업간의 독립경영 원칙을 저해함.

또한, 최근 이사들의 책임이 증가에 따라 이사들은 위험회피적인 소극적 경영을 선호하며 이러한 소극적 경영은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지연시켜, 회사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7)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와 손해발생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이중대표소송이 제기되면 회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게 되므로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임.

8)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이중대표소송제의 이용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투기자본이나, 기업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시민단체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음. 국제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이나, 주식 매집을 통한 단기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음.

9) 중복규제

부당내부거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내부거래 규정, 이사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는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규정,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규정 및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규정, 이익

의 부당제공의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의제 추정 규정 등 기존제도로 규제가 가능함.

10) 모회사 자회사 주주간의 평등권 침해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실질상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간 소재기의 평등권이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이상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반대론 참고자료 :

[2006년 7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년 6월 5일, 이중소송제도 득보다 실이 더 커, 자유기업원]

(2)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찬성론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주로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 환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에 기대하고 있음.

1)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론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아 종속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판례는 Martin v. D. B. Martin Co. 사건이 있음.

2) 동일인지배(Common Control)이론

동일한 경영진이나 이사에 의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한 판례로는 United States Lines, Inc. v. United States Lines, Co. 사건이 있음.

3) 신탁이론(Fiduciary Theory)

지배회사는 주주들에 대해 신탁의무를 부담하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신탁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 사이에 이중의 신탁관계가 성립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판례로는 Goldstein v. Groesbeck 사건이 있음.

4) 대리인 이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소송이 허용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판례로는 Piccard v. Sperry Corp. 사건 등이 있음.

5) 모회사의 책임추궁 방안 필요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특히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현실적으로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지배주주의 영향력하에 있어서 현행 대표소송제도로는 자회사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6) 시장교란행위의 엄정한 대처 필요

복잡한 출자 고리로 연결된 계열사들 간의 내부거래, 계열사 자산을 총수지분이 많은 회사에의 편법으로 지원 등등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다수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시장감독기구나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왔음. 앞으로는 이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임.

이상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찬성론 참고문헌 :

[2006년 6월 5일, 이중대표소송제도 득보다 실이 더 커, 자유기업원]

[2006년 7월 4일, 정찬형, 2006년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 법무부 공청회 자료]

[2006년 9월, 회사법 개정의 내용과 쟁점, CG Review 2006년 9/10월호]

[2006년 5월 19일, 천정배 법무부장관 인터뷰 내용, 손석희의 시선집중]

5.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제언

(1) 다중소송제로 확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가 만연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대표소송만으로는 미흡하며 손자(孫子)회사에 대한 3중대표소송 등 다중(多重) 대표소송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함.

(2) 지분율 요건 완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50%초과에서 30%초과로 완화하여야 함.

(3) 실질적 요건 명문화

남소의 방지^①를 위해 이중대표소송의 요건을^②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함. 법무부 안에 따르면, ^③이중대표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모자관계의 형성만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소유가 통합되어 있고, 회사와 소유자를 별도의 인격으로 볼 수 없어야 하며, 종속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존속하게 된다면 사기나 부정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본의 불충분과 자산으로 혼동, 회사형태의 형해화, 양 회사간의 이사나 임원이 겸임하고 있어

야 한다고 판시한 1987년 Brown v. Tenney사건{508 N. E.2d 347 (Ill.App.1 Dist.1987)}의 법원 판결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4) 관례의 발전적 축적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관례법으로 발전시켜야 함.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비록 모회사 주주이긴 하지만 자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꾸준히 하나 둘 쌓아감으로써, 남소(濫訴)를 막고 본 제도를 건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2006년 9월 12일, 이중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전삼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워크숍자료]

[2006년 7월 14일,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경제개혁연대]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1.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의의

(1)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 개념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러한 의무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함.

(2) 상법 개정시안의 관련 조문

2006년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의무규정을 신설함.

상법 일부법률개정안

제382조의5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에서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

(1) 미국에서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

1) 미국 판례상의 이론

미국법상 회사 기회의 법리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Equity Corporation v. Milton* 사건을 들 수 있음. 즉, 「.....회사의 영업범위에 포함되어 실제로 회사에 유익하고, 회사가 현실적인 이익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의 기회가 그 회사의 임원의 눈앞에 전재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그 기회에 관하여 자기의 이익과 경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회사기회가 침해되었을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회복, 그 침해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임원이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 그 이득의 기회에 관하여 성립한 권리에 대한 법정신탁의 설정 등을 당해 임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판례 외에도 회사에 발생한 이득의 기회를 이사가 자기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이득을 침해하는 예로는 1900년의 알라바마주 대법원의 *Lagarde v. Anniston Lime & Stone Co.* 사건, 델라웨어주의 1939년의 *Guth v. Loft, Inc* 사건 및 1956년 *Johnston v. Greene* 사건을 들 수 있음. 특히,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기회가 회사의 것인가, 이사 임원 개인의 것인가의 판단은 이사 임

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기회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회的使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법리를 공식화하였음. 또한 1971년 Kaplan v. Fenton사건은 기회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이의 판단에 필요한 행동지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즉, 『Guth사건 사례에 의하면, 이들의 기회가 이사 개인적 능력에서 발생하였고, 그 기회가 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러한 기회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더욱이 회사가 그 기회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는 그 이득의 기회를 회사의 기회가 아닌 자기의 기회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음.

2) 미국법조협회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론에 관한 규정

최근에는 미국법조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의 회사지배의 원리에서도 이 법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5.05(b)에서 회사의 기회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사인 수탁자가 회사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즉, 『 이사 또는 상급임원은 회사에 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임원의 이익과 회사기회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기회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기회의 거절을 하려면 회사에 공정하여야 하며, 그 기회가 거절된 경우 회사와 이해가 상반된 거래를 하는 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에서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 참고자료 :

[2004년 8월, 고재중, 회사 기회의 법리와 이사의 경영행위 - 미국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16집]

(2) 외국의 입법례

1) 호 주

COMPANIES ACT 1981 (No. 89 of 1981)
<p>SECT. 229. 임원의 의무와 책임</p> <p>(3) 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로 인해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처벌: \$20,000 벌금 내지는 5년의 징역형, 또는 병과</p> <p>(4)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처벌: \$20,000 벌금 내지는 5년의 형, 또는 병과</p> <p>(5) 이 조항의 목적상, ‘임원’이라 함은 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사 및 회사의 집행임원 등 (b)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계인 및 그 관리인 (c) 회사의 관리인 (지배인) 또는 부 관리인 (부지배인) (d) 회사의 청산인 (e) 회사와 제삼자간에 맺어진 협의 등의 절차를 집행하는 수탁자 <p>(6) (a) 어떠한 자가 이 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행위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법원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작위 내지는 부작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 내지는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을 확정된 법원은 (3)항 내지 (4)항의 처벌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에 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p>(7) 회사는 본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의 확정과 상관없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위반한 자 및 제3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분과 같은 금액, 그리고 (b) 이 조항의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된 손해 내지 피해액.

2) 싱가포르

SINGAPORE COMPANIES ACT (CHAPTER 50)
<p>회사 임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p> <p>§157. (1) 이사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p>

제 5 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 (2) 회사의 임원 내지 관리인은 자신의 지위로 인해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3)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회사의 임원 내지 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이러한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얻게 된 자신의 이익 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 (b) 유죄가 확정된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 필리핀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Batas Pambansa Blg. 68]

TITLE III: 이사회/수탁자/ 임원
Sec. 34.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이사가 자신의 지위로 인해 회사에 속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이사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 중 국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in 2005)

Article 149: 이사회나 상급임원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 공금의 배임
- (2)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관리하는 행위
- (3) 주주총회 (또는 다른 형태의 주주모임 등)이나 이사회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내지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5) 주주총회(또는 다른 형태의 주주모임 등)의 동의 없이 회사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회사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6) 제3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챙기는 행위
- (7) 회사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행위
- (8) 기타 회사의 이사로서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이러한 행위의 위반으로 얻게 된 소득(이익)은 회사에 속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6일, 경제개혁연대의 상법개정 입법청원 의견서]

3. 우리나라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론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특정 기업의 내부정보나 거래관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업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기업의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특정 기업의 정보 등을 이용할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회사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많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회사와의 자기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중, 회사의 기회에 해당하고 그 회사의 이어나 임원이 그러한 기회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경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왔음. 그런데 경업거래에 대항하는가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통설은 상법의 입법취지가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회사외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의 예방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목적사업보다도 광의로 해석하여, 회사기회의 유용을 방지하여 왔음.

[2004년 8월, 고재중, 회사기회의 법리와 이사의 경업행위 - 미국법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16집]

4.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제화 요청

(1)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입법화 요청

회사기회 유용 금지에 관한 조항이 2006년 6월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0월 입법 예고시에는 포함되었음. 그러자, 공청회 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조

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등장하였음.

1) 참여연대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제화 요청

참여연대에 의하면, 회사와의 자기거래(self-dealing; 상법 제397조)시 이사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 임원 포함)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예 이사회 결의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회사와의 자기거래(self-dealing; 상법 제397조)는 ‘회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지배주주 등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이지만, 회사기회의 유용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배주주 등이 그 기회를 가로채는 경우’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 두 경우 모두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도 상법에 반드시 도입하여야 함.

[2006년 6월 5일, 법무부의 상법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

2) 경제개혁연대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제화 요청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됨.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에 의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현실은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이사와 지배주주 등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행위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Korea Discount의 근본 원인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 여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성장에 가장 결정

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 특히 이사와 지배주주의 일탈행위 위험은, 비단 상장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아니라, 비상장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상존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법상의 일반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외부인에 비해 회사의 영업기밀과 기타 사정에 정통한 이사는 회사의 이익 대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위험을 안고 있음.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법은 이사에게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라고 함.

충성의무는 한편으로,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인 이익을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정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음. 이중 전자를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self dealing) 금지’라고 하고, 후자를 ‘이사의 회사 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금지’라고 함.

법무부 개정시안(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충성의무의 한 축인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는 여전히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경업 금지(제397조)의 경우 등기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개정시안과도 형평성을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임.

[2006년 9월 6일, 경제개혁연대의 상법개정 입법청원 의견서]

(2)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제화 반대의견

10월 입법 예고시에 공청회때 포함되어 있지 않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포함되자 재경계는 세계적 입법례가 없으며 입법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1) 남소 가능성

법적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이사의 광범위한 책임추궁과 이에 따른 남소가 우려됨. 즉, ‘현재의 사업기회’와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라는 표현 역시 특정 시점에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어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 이렇게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남소의 소지가 높고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위축이 우려됨.

2)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성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하다 할 수 있음. 회사기회의 유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등의 조항으로도 회사기회를 이용한 이사의 사익추구 행위를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선관주의의무나 비밀유지의무 등의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은 신설할 필요가 없는 과잉규제로 도입철회가 마땅함.

3) 모델의 부재

입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의 판례는 회사기회 유용 금지 자체보다는 이사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모델이 된 미국 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 중 ‘회사기회 유용금지’ 내용의 핵심은 이사가 어떤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공개하였는가에 여부를 강조한 것으로 ‘사업 기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사업기회를 회사가 포기한 경우 이사는 면책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제화 반대의견 참고자료 :

[2006년 10월 4일,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전경련 보도 자료]

(3) 회사기회 유용금지 관련 추가 의견

입법예고안은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를 신설하였지만, 그 위반시 회사나 주주에 의한 구제수단(즉 회사의 개입권(介入權) 및 주주대표소송의 적용 여부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실효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자기거래 규제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거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위반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제수단 역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2006년 10월 3일, 법무부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 집행임원제의 의의

(1) 집행임원제의 개념

집행임원제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경영전반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현재의 대표이사제와 달리 경영과 재무 등 분야별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전문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을 일컫음.

[2006년 11월 7일, 문화일보 기사참조]

(2) 상법개정안의 내용

이사회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할 집행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의 도입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①

②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 회사는 집행임원을
③ 둘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3.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다만 본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5. 집행임원이 수인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분담 및 지휘 명령관계 기타 집행
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결정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장을 두어야
하는데, 이사회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최초로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 ② 1. 회사의 업무집행
- ③ 2.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②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인인 경
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제38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대표집행임원에 준용한다.

③ 제395조의 규정은 집행임원설치회사에 준용한다.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
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소집청구) 집행임원은 필요한 때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8조의8 (집행임원의 책임)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집행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집
행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다른 집행임원,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집행임원 관련 규정은 업무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상 이사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됨. 즉,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6조(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이사의 영업금지의무),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의무), 제400조(이사의 책임감면),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3조 내지 제408조(주주의 대표소송,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12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의 규정이 준용됨.

집행임원도 이사 감사와 같이 등기사항으로 하고,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별하여 등기하도록 함(상법개정시안 제317조 제2항 제8호~제10호).

2. 집행임원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미국에서는 미국법조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가 1992년 3월 31일에 최종안으로 제안한 『회사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에 의하면 “공개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주요 상급집행임원(principle senior executives)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나 주요 상급집행임원의 위임을 받은 기타 임원 및 피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LI의 원칙 제3.01조).

(2) 유 럽

유럽에서는 상급 회사법 전문가(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가 2002년 11월 4일에 보고한 『유럽에서의 회사법의 최근 규제 구조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에 의하면 “ 이사회는 개편은 유럽연합국가 외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국가에 있어서도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의 핵심이 되고 있음. 일원적 경영기구(영미제도)와 이원적 경영기구(독일제도) 둘 중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감독기구가 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각국은 그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이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일원적 경영기구(영미제도) 또는 이원적 경영기구(독일제도)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고 또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또는 감독이사(감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나, 유럽연합국가에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내이사(집행임원)의 선임과 보수 및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계감사는 전적으로 사외이사 또는 감독이사(감사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업무는 과반수가 독립적인 사외이사 또는 감독이사(감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내의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3) 일 본

2005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회사법(이하 ‘日會’로 약칭함)도 위원회 설치회사에서 이사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등에 관한 업무집행의 결정 집행역(집행임원)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업무만을 하고(日會 제 416조 제1항), 회사의 업무집행은 집행역(집행임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日會 제418조 제2호). 또한 이사회 설치회사에서 이사회는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의로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을 집행역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日會 제416조 제3항), 이 때에는 집행역이 그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日會 제418조 제1항).

집행임원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참고자료 :

[2006년 7월 2일, 정찬형, 2006년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제1소위원회), 법무부 개최 상법공청회]

3.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집행임원제 도입 찬성론

1) 업무 효율성 증대

사외이사제도(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종래보다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못하면서 종래보다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법정의)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이와 같이 종래의 이사(등기이사)의 수가 대폭 축소되어 대규모 회사는 이러한 이사만으로는 도저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종래의 이사(등기이사) 대신 회사의 정관 내 규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임원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을 맡기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집행임원은 실제로 과거의 등기이사가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고 이로 인하여 보수 등에서도 등기이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재 상법 등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그의 지위(위임관계냐 또는 고용관계냐) 권한 의무

책임 등에서 많은 법률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임원에 관하여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2) 입법적 명확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에서 종래의 등기이사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고 또한 등기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집행임원의 지위는 위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라고 계속하여 판시함으로써(大判 2003. 9. 26, 2002 다 64681 ; 同 2005. 5. 27, 2005 두 524) 회사가 이러한 집행임원을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경우 노동법상 부당해고라 하여 회사와 집행임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따라서 집행임원에 관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회사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3)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한 이러한 집행임원의 지위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행임원도 그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집행임원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집행임원의 경영활동과 거래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사 및 제3자의 손해를 방지하게 할 수 있음.

4)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정립

회사의 집행임원들은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화 하여야 함. 집행임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예를 들어 3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임기를 보장하여 위임관계라는 점과 임기보장을 하여 회사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5) 사외이사 제도 실패의 보정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감독기능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상 집행임원제 도입 찬성론 참고자료 :

[2006년 7월 2일, 정찬형, 2006년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제1소위원회), 법무부 개최 상법공청회]

[2006년 03월 20일, 최승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 반대의견

1)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저해

집행임원제는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처럼 상법에서 근거 마련 후 증권거래법 등에서 강제화 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며, 도입 시 기업의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 우려됨.

2) 업무집행지시자로 포함 가능

집행임원제가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서라고 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라면 집행임원제의 도입이 아니라, 현재의 업무집행지시자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여전히 불명확하다면, 상법 제401조의 2의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개념을 상법이 포섭할 필요는 없음.

3) 실질설에 의한 임원과 회사의 관계 설정

우리 법과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특히 임원을 초급임원과 고위임원으로 구분한다면, 초급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성

격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법에 명문화하여 위임관계라고 하면 항상 위임관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실질설).

4)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가능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증적인 검토가 없이 아직 사외이사제도의 성패에 대하여 논할 단계가 아니며, 실제 사외이사들은 충분히 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회사가 준비하는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히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의사결정방식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는 지금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과정이며, 반드시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별하는 것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 정착되고 도상에 있는 현재의 제도가 반드시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5) 주주권의 보호의 퇴보

대표집행임을 포함한 집행임원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선임과 해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으나, 현행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들로부터 주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주주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6) 이사회 감독권한 유명무실화

집행임원의 종류나 수에 관하여 필요최소한이라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서, 개정시안대로라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소수의 이사 겸직 집행임원의 경우만 등기를 한 채 대다수의 집행임원을 현행대로 비등

기로 운영할 경우 집행임원제는 행형화되고, 따라서 이사회 의 감독권도 유명무실화되고 기업으로서 는 운영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함.

7) 자기모순

현행 상법하에서 이사회 의 임무는 회사 의 의사결정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진 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사들이 스스로 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자기모순을 안게 되는 것임. 상법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증권거래법에 반영돼 상장회사에 적용될 경우 강제규정이 될 수도 있음.

이상 집행임원제 도입 반대론 참고자료 :

[2006년 11월 8일, 최준선, 상법 개정안 의 내용과 문제점, 문화일보 기사참조]

[2006년 10월 4일,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 입장, 전경련 보도자료]

[2006년 03월 20일, 최승재,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6년 03월, 강신욱,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그 문제점, 월간전경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

· 저작권법 개정안 현황 및 주요내용

1.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현황

최근 발의된 주요 저작권법 개정안은 5가지 정도로, 이 중 정성호 의원, 이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이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005. 12. 6)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통합되어 대안으로 의결됨. 그 외 천영세 의원과 박찬숙 의원 발의안은 아직 문광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	의결일	주요내용	비고
정성호 의원	05.9.4	05.12.6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를 비친고죄로 개정함. 단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유지함	국 회 문 광 위 대 안 법 사 위 계 류 중
이광철 의원	05.6.13	05.12.6	-디지털 기술 발달 및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전체 개정	
우상호 의원	05.10.3 1	05.12.6	-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저작권 인증,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 수립 시행,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	
박찬숙 의원	05.11.9	-	-저작물의 정의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로 확대함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초상재산권을 신설함	미 의 결
천영세 의원	05.12.6	-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 원격 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외 전송을 일부 허용함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범위 확대를 위해 저작재산권 제한의 포괄 조항을 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영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2006년 6월, 문화산업관련법안 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 2006-02]

2. 문화관광위원회의 개정안(대안) 발의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2005년 10월 31일 이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006년 12월, 著作権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는 동시에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내지 제12호).

나. 공중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2호).

다.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신설).

라.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신설함(안 제18조).

마.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저작자의 것만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안 제24조).

바.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

사.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5조제5항 내지 제9항).

아.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 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자. 도서관 등에서의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차.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결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64조).

타.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안 제66조 내지 제68조).

파.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안 제70조).

하.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안 제71조 및 제80조).

거.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신설하여 부여함(안 제72조).

너.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 및 제83조).

러. 저작인접권의 발생 시점과 보호 기간 기산 시점을 분리하고, 음반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안 제86조).

머. 권리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 중단해야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함(안 제103조).

버.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104조 신설).

서.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관리업자가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7조).

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설치 목적을 확대함(안 제112조).

· 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표준화 정책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113조).

커. 저작권 분쟁 조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안 제114조).

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

피.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 신설).

허.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III}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40조).

[2006년 12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별 주요 의견

1.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관련 논의 ^①

(1)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

② 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기술적 조치 제한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에 필요한 수단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95조 b). 권리자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시 (제111조 a(과태료조항)의 제1항 제2호),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11조 a의 제2항). 또한 제95조 d(표시의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 및 보호대상에 기술적조치의 특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95조 b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함.

2) 호 주

법집행과 국가 안보목적의 합법적 행위(116A(2)),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116A(3) 내지 (9))에 대하여 적격한 사람이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장치 또는 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회 장치의 제조와 수입에 관해서도 법에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음.

3) 미 국

국립도서관장의 절차에 따른 특정 클래스 저작물 예외((Sec. 1201)의 (a)(1)(B) 내지 (E)), 비영리 도서관, 아카이브, 교육기관의 면제(같은 절의 (d)조항), 법집행, 정보, 다른 정부활동의 예외((e)항) 등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함.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외국의 입법례 참고자료 :

[2005년 12월 30일,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서]

(3)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

1)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 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
첨부도 이제 못함.

· 필터링 기술 장착 의무자인 OSP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함.
OSP 범위를 ‘P2P’와 ‘웹하드’에 한정해 설명 하지만 이 조문은 게시
판 e메일 메신저 등에도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음. 또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앞서 필터링 기술을 마련해야 하
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이는 중국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파일교환 서비스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설비
장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든 OSP를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하
고 있음. P2P 기술 등이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개정안은 기술기업의 창의적 개발의욕과 활로모색을 가로막
을 우려가 있음.

[2005년 12월 25일, 손승우, 서울경제신문 기사 참조]

2)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온라인이 아니며 또한 모든 콘텐
츠가 아님.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다
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P2P나 웹하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 따라서 포털 사이트 메신저 서비스, 일반 게시판 등은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이메일 역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06년 12월 9일, 우상호,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3) 해명에 대한 재반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P2P 기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라고 언급하면서 음악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의 작동원리는 근원적으로 P2P(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적인 것임.

OECD에서도 2004년도에 발간한 정보기술 보고서(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4)를 통해 P2P기술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배포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였고, 또한 P2P기술이 음반 매출 부진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아니라고 진단한 바 있음.

[2006년 12월 12일, 정보공유연대,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검열 관련 논의 ^①

(1) 관련 조항

②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 폐

- ④ 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 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

1)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사실상의 검열효과가 존재함.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그 하위 공무원의 실무 능력 불비되어 있음.
- 청문절차, 구제절차 등 불비되어 있음.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 제133조에서 권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온라인상의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교통신호 위반이나 불량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같이 일반 공무원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일수 없음. 특히 완전 복제품(dead copy)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됨. 따라서 문광부장관 등이 저작권 침해물인 여부를 판단하여 폐기할 수 있게 한다면 오판

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 폐기 또는 수거 (제1항)하거나 복제물 전송시 삭제 또는 중단 명령 (제4항)을 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복제물 등의 소지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 청문절차 미비 등 적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삭제 또는 중단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글을 게시한 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되는 경우 글을 게시한 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될 여지도 있음.

[2005년 12월 30일,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서]

2)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

단속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검열은 더욱 아님.

제1항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수거 폐기 조항은 기존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 흩어져있던 수거 폐기 조항은 모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임.

신설된 제4항의 경우,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오프라인 음반 비디오 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의 취지임.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열이 아님.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2006년 12월 9일, 우상호,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3. 비친고죄화 관련 논의

(1) 관련 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 한해서 비친고죄로 되어 있음.

(3)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

1)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임.

저작권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함.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

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성은 없음.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음. 현행 저작권법이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저작권의 허위등록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한편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 수사 전 또는 수사 후에 권리자들의 고소를 받아 처벌하면 된다. 친고죄로 둘 경우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가 없으면 바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다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수사와 소추를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이미 상표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만 친고죄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표권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상표법상의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양 권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정적 열거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입법 태도라고 할 수 있음.

개정법률안 제안자들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권리침해행위를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하는 경우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품을 수입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리”와 “반복”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 문구로 비친고죄의 대상이 얼마나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임. 더불어 “영리”, “반복” 또는 “업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행정부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도 우려됨.

[2005년 12월 29일,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조항 범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2)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

비친고죄화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함.

모든 저작권 위반행위가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저작권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작물 이용질서나 문화산업을 비롯한 지식정보 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이 법안은 만연화되어 있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불법유통 실태를 개선하여, 이미 새로운 사업모델로 안착된 온라인 시장의 합법적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자와 사업자, 사용자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출되었고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

따라서 이 법안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제한할 의도도, 내용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및 이를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2006년 12월 9일, 우상호,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제 6 장 결

이상과 같이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 로 나누어 입법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대립되는 논쟁이 존재하 는 분야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견해나 연구원의 견해는 전적 으로 배제한 채 당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에는, 독신자의 입양과 관 련하여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과 독신자 입양 허용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뉘었으며, 혼 인가능연령이 남녀가 다른 것에 대하여 이는 양성에 대한 차별로 철 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양성평등과는 무관하게, 생물학적 이유로 존 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며, 남성의 육아 필요성 증가에 따 라 과파쿼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현실상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에는, 체벌금지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권확립을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교춘지 근절법의 제 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 였고,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놓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였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입법의견』에는 애완동물등록제 를 도입하여 유기견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비하자는 의견에 대 하여 제도 도입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반발의견이 있었 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

대와 방임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존재했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의견』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유용금지 법제화, 집행임원제 도입을 놓고 재경제와 경제시민단체간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검열, 비친고죄화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였지만, 논의가 두드러진 과제들을 선정하여 정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입법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연구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의견들이 법 제도에 반영되어 실질적 민주주의가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부 록

《 이 벤 트 를 통 한 입 법 의 건 조 사 결 과 》

1. 이 벤 트 개 요

1) 이 벤 트 실 시 방 법

국민의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원이 수행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과제제안이벤트를 개최함. 이 이벤트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법제처 홈페이지, 70여 대학의 법과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 뉴스레터에 게재 배포되었으며, 온라인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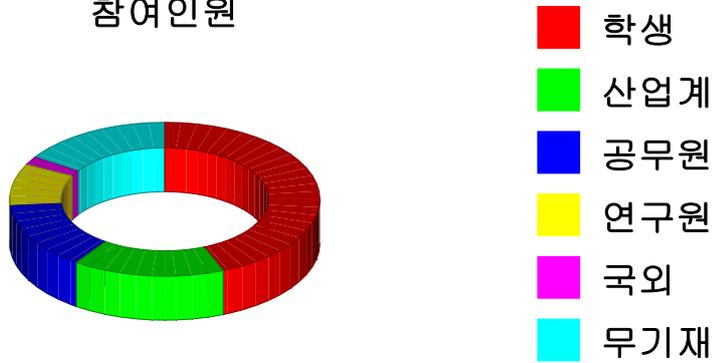
참여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참여마당 게시판의 [과제추천]란에 연구원에서 수행하기를 원하는, 혹은 법제관련 연구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연 1회 과제추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발굴된 연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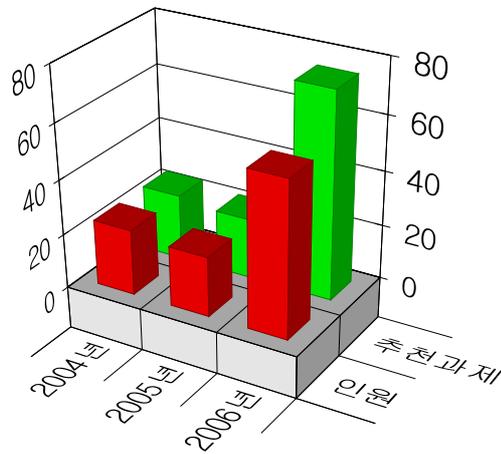
2) 이 벤 트 참 여 현 황

이벤트 기간 중 57명이 참여하였고, 총 75개 과제가 추천되었음. 이는 1인당 평균 1.32개의 과제를 추천한 것으로, 총 7개의 과제를 추천한 분이 최다과제추천자가 되었음. 참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이 25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 9명(15.8%), 공무원 8명(14.0%), 연구원 5명(8.8%), 국외 1명(1.8%) 순이었고,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9명(15.8%)이었음.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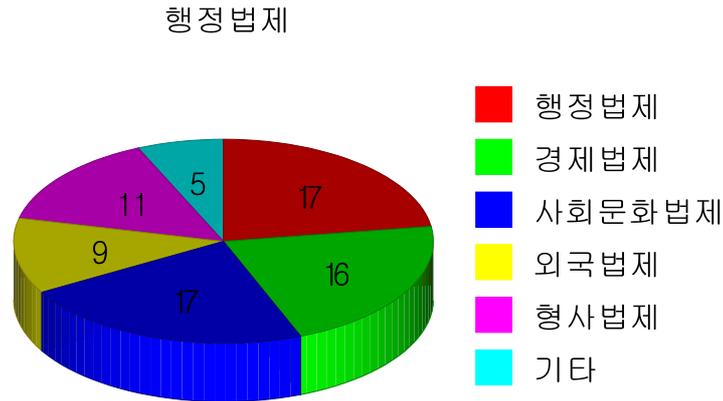


이는 24명이 24개의 과제를 추천하였던 2004년과 22명이 22개의 과제를 추천한 2005년에 비하면 참여자와 제안과제 수에서 상당한 증가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음.



추천과제는 행정법제분야가 17개 과제(22.7%), 경제법제분야가 16개 과제(21.3%), 사회문화법제분야가 17개 과제(22.7%), 외국법제연구가 9

개 과제(12%), 형사법제연구가 11개 과제(14.7%), 기타 제안이 5개 과제(6.7%)를 이루었음.



3) 우수과제 선정 및 과제 발굴 현황

연구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된 과제 중 총 5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함. 최우수 과제로는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에이전트제도의 입법방안 연구」, 「연구윤리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자격제도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연구」, 「의료보험법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 사회복지의 추구’ 방안」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됨.

이 중에서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와 「에이전트제도의 입법방안 연구」는 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발굴하여 수행 중에 있음.

2. 제안과제 총괄

《 》

행정법제

	과제명	추천내용
1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법적 지위 연구	주택법에 있어서의 시행과 시공의 개념을 정리하여 등록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확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	미국과 프랑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과 IAE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권고안 등을 검토하여 한국적 방사성폐기물법(안)을 제정방안 제시
3	자격제도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한 연구	아래와 같은 자격제도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하여 연구 - 반영구화장 - 에이전트 또는 대행업 - 로비스트제도 - 기타외국에서는 적법한 자격제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자격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청소년유해업 소의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유해업에 관한 관련법률 간의 조정, 위해의 종류 대상 경중 분류, 유해업소의 관리 감독 강화(안) 마련
5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단속에 의한 범칙금의 일원화 방안 연구
6	주택관리 관련법령 통합법 제정	주택 관련 법령을 건설에 관한 부분과 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에 관해서는 가칭 “주택관리법”의 제정방안, 건설에 관해서는 가칭 “주택건설법”의 제정방안 연구
7	주택관련법령 의해설서 발간	주택관련 법령(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주택법 등)의 해설집을 발간
8	위원회 관련규정의 유연성 확보방안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장 등을 법령에 정하여 강제 구성토록 하던 것을,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의 개선방안 제시

9	규제개혁의 정당성과 공익을 위한 규제 강화	사회전체의 질서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규제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하여 연구
10	현대사회에서 처분적 법률의 기능과 한계	일반성을 결여한 법률로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한 논리를 탈피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의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연구
11	국민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소독)법 제정에 관한 연구	치과위생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 소독지침의 법제화 - 법제화 된 규정에 대한 치과의료진들의 의무교육 - 치과대학 학부생들의 소독관리 교육과목 커리큘럼화 - 정부에 관리, 감독 의무 부과
12	행정소송법의 한계와 개정논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시
13	정보통신기본법의 제정과 정보화 관련 법제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관련법령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은 무엇을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개별법은 어떻게 제-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
14	기후변화책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 국외의 기후변화 책임에 대한 법적대응방식 모색 - 국내 기존 법률로서의 기후변화책임 제재방안 검토 및 새로운 환경법이론 모색 -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법률안 제시
15	성인오락실의 실태파악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적연구	- 성인오락실의 실태파악 - 성인오락실의 불법/탈법 영업파악 - 성인오락실에 대한 법률규제 - 관계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관련법률의 명확화로 규제강화 - 불법/탈법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과 지속적인 법률 규정화
16	원어민 영어강사 자격 규제 강화	원어민 강사에 의한 신분 조작, 성 범죄(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원어민 영어강사의 자격규제의 강화 연구
17	의제조항의 법적성격 연구	건축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에 존재하는 의제조항들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분석 독일에 있는 집중효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및 한국의 의제조항과 비교법적 검토

《 》
경제법제

	과제명	추천내용
1	에이전트제도의 입법방안 연구	미국 등 엔터테인먼트산업 부흥 국가의 에이전트 제도 고찰하고, 우리의 에이전트 제도 및 유사제도 고찰하여 에이전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
2	우리나라 해안에 관한 주변국과의 법제도 비교연구	유엔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관계연구,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해안에 관한 법률 및 제도 비교연구, 양에 관한 일본과 중국의 국내법과 우리나라 국내법의 비교 연구
3	한미 FTA에 대비한 지적재산권제도 연구	미국의 지적권제도와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특허법과 저작권 규정을 비교 검토
4	재산권의 보호와 법의 역할을 통한 경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북한 등 우리와 연관성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법과 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법 형성과정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방법 연구
5	조세분쟁의 입증책임 법제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되 납세자가 각종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전환 - 추계과세요건의 완화와 추계과세방법의 완화를 통한 근거과세의 간접강제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 - 미국 조세법원규칙등에 내용과 비교검토를 통한 입증책임의 입법화 논의 등 연구
6	공공기관의 입찰방식 계약체결의 적법성통제 및 구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나 관계인들이 1차적으로 당해 계약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요건을 제도적으로 검토
7	특수한 형태의 영업과 지적재산권 문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영업과 지적재산권문제 연구 : 상호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상표법에 의한 보호, 도메인 네임 등록, 웹페이지 보호, GUI보호 등 - 사이버콘텐츠 제공업과 지적재산권 : 소프트웨어보호, DB보호 등 -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과 지적재산권 : OSP의 저작권 책임 - 사이버 쇼핑물과 지적재산권 : 영업방법의 보호
8	전자상거래와 특허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와 관련 발명의 정의와 특허법의 보호 규정 연구 및 개선방안 제시

9	증권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외국자본과 비상장주식 등)	증권시장의 특성상 증권거래법이 자주 변경되는 점에 착안해서 현재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운데 외국자본(펀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검토
10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	성명 또는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법률적 이익으로서의 성명권 또는 초상권이 인격권으로 인정되어, 초상권 또는 성명권에 대한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화 방안 연구
1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내용,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검토 - 우리나라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가지는 의미 검토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역할 및 효율성 범위 검토
1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집행임원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
13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처분명령에 대한 추가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의결권을 제한의 위반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5%를 초과하였을때, 그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에 제한을 받는지, 초과한 부분에만 대하여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 처분명령에 대한 주식의 재취득조항 신설 검토
14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구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분야의 법제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제를 조사 및 연구검토 -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현황 조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및 결론 제시
15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법체계정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관광진흥법의 분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구
16	헌법과 특허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특허권의 합리적인 제한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사이에서 헌법과 상충되는 특허법상의 규정들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

《 》
사회문화법제

	과제명	추천내용
1	의료보험법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 사회복지의 추구' 방안	화상흉터치료등을 미용수술에서 화상보험 적용되는 여부 검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의 확대적용검토 고가의 치료제의 의료보험 혜택 검토
2	동성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연구	- 동성애자 관련 현황 및 현행 법제도 분석 - 각국의 동성애자 권리보호 관련 입법/판례 분석 -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프라이버시 - 동성애 혐오범죄 처벌 법안 - 동성애자의 혼인 및 입양
3	연구윤리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윤리법의 강행규정성 여부 - 법규의 적용범위 -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연구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 문제
4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 ‘학습 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책 - 혼혈인 차별방지 법안의 입법방향 - 관련기구의 설치 -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 개정방안
5	근로자 4대보험의 민간전환	근로자 4대보험 관련 부분에 관하여 현행 정부출자기관에서 관리 및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전환하고, 민간기간의 활발한 활동과 중복되는 정부 출자기관의 정리 및 아웃소싱에 관한 법 제정 방안 연구
6	질병발생 원인 책임에 관한규정	병의원(종합,개인병원)등의 의료사고(감염등등)에 관한 질병 예방에 관한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감염예방에 관한 법 제정 방안 연구
7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적 연구	- 성전환사건의 쟁점연구 - 외국 입법례 연구 - 유럽 및 미국의 주법, 일본 특별법 - 외국의 판례 및 국내동향 연구 - 병역법, 행형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방안 제시

8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공공재원의 분배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이 현실적으로 시민의 가계에 영향을 주는 법제도 개선 - 아동의료비 무료를 위한 공공의 책임(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임론) - 사교육을 능가하는 공공교육의 방향을 위한 법제도 창출
9	성전환과 헌법상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연구	자기의 성과 다른 성으로 전환 할 자유와 행복 추구권 및 성 전환의 법적 인정여부 연구
1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신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
11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유형화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포섭되지 못하는 신종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공백상태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12	청소년의 출입에 따른 멀티놀이방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중국의 정부조달법제 연구	기계 하나로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의 기능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신종 놀이공간인 멀티놀이방에 대한 관련법(청소년 야간출입금지, 성인여부 파악) 제정 방안 연구
13	평등사회를 위한 장애연금법 개정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판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등급판정 기준 마련, 복수의 자문의사 선정을 통한 장애판정의 객관성 확보 - 장애등급에 따른 객관적인 수급조건 제시 - 합리적인 연금제도 시행으로 연금수혜자들(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14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법률개정에 관한 연구	출산율은 낮아지고 수명은 연장되는 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의 제 개정 연구
15	동물보호법 규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검토하고 외국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개선방안 제시
16	해외입양규제와 입양아 지원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양 규제방안 및 국내 입양을 장려 방안 제시 - 해외 입양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뿌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부 록

	제정	- 사설 입양 기관들에서 입양아들이 각자 개인 정보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법적 근거의 마련
17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대안 등 《 》	현재 사회보험의 부과체계는 각 개별보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구분이 없이 정부조직의 직제에 따라 산재-고용, 건보-연금으로 구분되고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의 경우 부과체계가 소득 + 재산, 소득으로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인 “소득”의 개념에 대해 상이하여 이러한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외국법제

	과제명	내 용
1	중국의 경쟁법제도에 관한 연구	2003년 발표된 가격독점행위금지규정 등을 분석, 연구
2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법제 변화 연구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법제 변화 연구를 통한 양국간 분쟁해결 방안의 마련
3	유통기업의 중국진출시 검토해야 할 정책 및 법규	중국유통산업의 현황, 정책, 주무부서 등에 대한 분석하고 유통기업이 중국진출시 검토해야 할 법규 번역하여 소개
4	사베인스-옥슬리법안에 대한 연구	미국에 엔론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사베인스-옥슬리법안에 대한 연구와 이 법안이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도입 가능 여부 및 도입시 예상되는 영향 분석
5	중국법률의 자본주의법체계 이식과정연구	중국의 자본주의 법 수용과정에서 일어난 법적네트워크 형성이나 법률개정 등 연구하고 법 체계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석
6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법적규제 연구	- 중국의 M&A 활성화 배경 및 관련 입법현황을 연구하고, 3. 중국의 M&A 입법현황 및 특징을 분석 - M&A 에 따른 리스크 유형과 사전 대응책 제시 - 중국의 M&A 관련 법령(약 20여개) 소개
7	중국의 기업청산법제 연구	- 중국의 외자기업청산법제 현황과 특징 및 주요 내용 연구 - 외자기업 청산사례 분석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책(혹은 시사점) 제시 - 외자기업청산관련 법령(약 10여개) 번역 소개

8	미국 법률용어사전 “Black's law” dictionary 번역안	미국 법률의 이해를 돕는 Black's law Dictionary 번역본 발간
9	중국의 정부조달법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법률체계 현황, 특징, 주요법령의 내용. 정부조달의 원칙, 조달주체, 조달방식, 조달절차, 조달계약, 법률책임 - 정부조달및 입찰 사례 분석 - 한국기업의 접근방안과 유의할 점 - 정부조달관련법령(약10여개) 번역 소개

형사법제

	과제명	내 용
1	논문조작에 대한 처벌과 근거법률 연구	논문조작이 막대한 수익과 연결된 점에서 연구와 논문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처벌할 법률이 정비방안 마련
2	성범죄자 재발방지 각국의 입법례 조사	신상공개,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 각국의 입법례 및 이의 도입 후 효과 분석
3	밀수 또는 counterfeit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도의 적정성 연구	밀수 또는 counterfeit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현재의 법정 처벌 강도의 적정성, 적용에 있어서의 타당성 등 연구
4	수형자의 법적지위에 따른 투표권 여부	수형자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방안 제시

부 록

5	특별법에 의한 가중 처벌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특별법이 남발된 원인과 문제점 제시 - 형법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판단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사점 분석 - 바람직한 형사특별법의 개정방안 제시
6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적 구제수단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침해에 있어서의 침해죄 성립여부를 명문화 - 과실범처벌규정의 신설여부 검토 - 필요적 몰수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7	벌금형 징수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고액 벌금형 납부자 대부분은 행방불명으로 소재파악이 어렵고, 형사시효의 경과로 벌금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벌금형 징수율 제고방안에 관하여 연구
8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사회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규의 정비와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 갱생보호공단 지원의 강화,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마련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 정책 제시
9	폭력사건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폭력(가정폭력 포함)사건 벌금을 대폭 인상, 상습 폭력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방안, 관련 법률 강화를 통한 폭력가해자의 죄의식 제고방안, 관련 법률 강화를 통한 생명 신체에 대한 중시 풍조 제고 방안 등 폭력사건 근절방안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10	국민사법참여 제도로서의 배심제 연구	영, 미 등 배심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연구
11	성매매 특별법 시행 효용성 연구	국가 차원에서 여성 혹은 남성의 신성한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방지’가 아니라 ‘철폐’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방안 연구

《 》
기 타

	과제명	내 용
1	법령추록분의 CD 수록과 보급	법령추록분의 CD 수록과 보급
2	만화제작	민법중 생활에 밀접한 부분 (예컨대, 등기관련 및 임대차등)을 만화로 제작
3	입법에서의 한류 현황과 정책추진과제	우리나라의 법률수출현황 및 기대효과 연구
4	朝鮮時代 徒刑의 실태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錄, 承政院日記, 奎章閣 소장 사료 중에서 도형 관련 사료 수집 - 도형에 해당하는 형벌의 내용 검토를 통해 도형죄수와 형벌과의 상관관계 파악 - 도형 죄수들의 職役別, 身分別, 地域別 분포와 시대적인 차이나 차별성 검토 - 도형 작업장의 분포와 도형에 해당하는 노역의 종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도형수의 관리 상황 등 검토 - 위배형과의 관련성 검토
5	우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법제의 발전과정(의용, 계수 또는 모방, 고유법제의 탄생) - 현행 주요 법제에 대한 외국법의 영향(외국법의 계수현황(부문별, 시기별 등)) - 외국법 계수의 필요성과 한계 - 우리 고유의 법제의 탄생배경과 발전가능성 - 우리 법제의 향후과제